

탁아월등의 길잡이 1994년 8,9월 합본호 첫발행 92.5.25. 통권 23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4. 8, 9월 합본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淑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4년 8,9월 합본호 첫발행 92.5.25. 통권 23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4. 8, 9월 합본호



〈교사지원 설명〉

최소, 적고, 과다, 과잉
정제, 과잉, 과잉, 과잉
이해, 과잉, 과잉, 과잉
교육, 과잉, 과잉, 과잉
사회, 과잉, 과잉, 과잉
아이, 과잉, 과잉, 과잉

〈기획논의〉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 기획 / 19

● **94. 8, 9월 합본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일하며 생각하며

보육행정의 내일을 기대하며...

김형근 / 서울시 의원, 지역환경연구소 소장

시의원 임기를 1년 남겨놓고 필자는 93년도 서울특별시 결산에 대해 검사하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필자는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예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자료를 검토하였다.

93년 아동복지 총예산은 약 136억원으로 이중 132억원이 지출되었다. 이는 서울시 총 예산 6조 450억원중에 약 0.2%밖에 안되는 미약한 액수이다. 아동복지예산의 대부분은 약 106억원을 차지하는 보육시설운영 지원금으로, 이는 주로 구립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지출된다. 현재 제일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예산은 불과 8억원이다. 이 8억원에는 어린이집 3개소 신축 보조비 2억원과 어린이집 개보수 보조비 6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나마 지출은 4억 8천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었다. 담당자를 불러 8억원조차 다 못쓴 이유를 물으니 신축 어린이집중 1개소는 모기업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대신 설립하였고, 개보수 보조비중 일부가 대상이 없어 사용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예산의 만분의 일에도 못미치는 예산조차 40%는 안쓰고 남기는 행정을 칭찬해야 할까? 어쨌거나 이것이 서울시 아동복지 행정의 현주소이다.

물론 행정부측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은 주로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므로 시예산의 중복편성은 불필요한게 아니냐고. 그렇지만 예산 자금도가 50%에도 못미치는 자치구가 다수인 현실에서 구의 아동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뻔한 일인데, 이를 외면하고 단지 구색 맞추기로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조차 남기는 서울시 행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전에 보사부에서 민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책으로 은행용자를 알선한다는 공문을 보았다. 그 효율성은 차치하고 이러한 시도 자체는 전향적으로 칭찬할 만 하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보사부보다는 서울시를 위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편이 더 나았으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의 편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임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배분해주지 않는 한 지방정부는 성장을 멈춘 어린 아이처럼 정체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가 앞서 아동복지행정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서울시 행정이 해결해야 할 전반적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내년에 선출된 민선시장은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쇄신하되, 아동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분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앞선다.

■ 지상강연

지방자치, 지역운동, 여성운동

이미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 머릿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4년도 중점사업을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정하고, 1995년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이 의석의 2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밖에도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회원단체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판하고 협조하는 일을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서 여연 회원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여성대중들이 참여하는 여성운동단체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중점사업의 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첫째, 지역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탁아운동이나 빈민운동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뿌리 내리고 하는 운동이 거의 없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이기 보다는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중앙권력과 싸우는 운동이 대부분이었다. 여성운동도 지방에 있는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문제보다는 중앙권력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여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둘째, 지역의 관점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노동자 농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생태계의 관점에서 변혁의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점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할 것이지만, 80년대의 민중중심의 관점을 보다 폭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방식, 다양한 참여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투쟁의 방식에 주로 의존하였다면, 직접참여, 압력단체로서의 참여, 자원자로서의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참여의 일환으로서 여연은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일을 결정한 것이다.

여연이 지방의회에 20%의 여성이 당선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자 다음과 같은 질문도 받고 있다. 즉, ‘주민의 삶의 향상이 여성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좋은 사람이 의원이나 단체장이 되어도 좋지 않은가?’ 또는 ‘꼭 의원이나 단체장 되는 것이 중요한가? 주민운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강

화할 수 있다. 후보 전술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 지방자치나 지역운동도 우리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후보전술 역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21세기 사회전망과 지방자치의 관점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운동의 요구에 의해 1992년 30년만에 부활되었다는 의미 이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시대적 요구이다. 그럼 21세기 사회는 어떤 시대적 변화를 보이며, 인류의 나아갈 길에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가? 지방자치의 관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1) 생활정치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회복의 관점

냉전시대의 종식은 국제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 권력이 퇴조하고, 관료주의적 통제에서 권력의 지방분산과 주민의 참여를 과제로 던져주고 있다. 냉전시대의 인권은 정치적 기본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권 요구와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적 억압,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의 철폐 등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정치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회복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민주화의 과제이다.

2)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실현

환경은 미래를 주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철칙이 될 것이다. 생태계의 처참한 붕괴 앞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성장’과 ‘개발’ 중심의 산업화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있다. 사회주의도 몰락하였지만, 끝없는 성장과 개발, 자본의 독점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역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와 대량폐기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생활양식에서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한 생산, 소비의 대안을 발굴하려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내 지역 사회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지역운동이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 공동체의 실현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3) 지역에서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화와 지역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사람의 이동성이 속도화되고 강력화됨으로써 세계가 좁아지고, 우리끼리 우리만의 방법으로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경제의 단위가 국가 중심에서 국경을 넘어서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경제체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재개편되고, 경제의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를 중심으로, 또한 중앙을 중심으로 세계와 접촉하였다면, 이제는

지역에 앉아서도 세계와 같은 속도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수평적 관계, 역할분담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 돌아가는 사정을 중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한 낙후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생태론자의 관점이 지방자치의 철학에도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4) 창조성, 개성,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

창조성과 개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생활가치로 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냉전시대, 개발과 성장의 대량생산 시대에는 이러한 가치들이 억압당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 형태도 “남과 다른 나만의 개성 추구”로 바뀌고 있어서 과거 대량 상품 생산이 다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거대한 자본으로 표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잘 먹히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그 전략이 불리한 영역으로 되고 있다. 창조성과 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힘이 된다. 이런 뜻에서 지역사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창조적 문화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중앙통제의 관료주의 아래서는 불가능하다. 중앙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교육제도가 아니라 교육자치를 통해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는 창조성, 개성,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위와 같은 관점들과 과거의 자본 중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기반으로 한 성장, 개발의 논리, 그리고 풍요한 소비적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는 부유층의 이기주의, 중앙집중의 관료주의와의 갈등이 주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예.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협조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제1세계의 환경 쓰레기를 제3세계 빈국에게 떠넘기는 문제등이 주요한 국제적 갈등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세계적 변혁의 과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시대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계층, 지방을 중앙에 종속시키려는 관료주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고, 경제논리에만 입각하여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자본의 입장에 선 정치, 개성과 독창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는 보수주의 등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민주화가 투쟁에 의해서 조금씩 쟁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관점이 현실 정치와 주민들의 삶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주어진 지방자치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할 우리들의 새로운 과제이다.

3. 여성의 삶의 요구와 지방자치

1)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

산업사회는 핵가족화를 촉진하였고, 직장과 가정의 영역을 분리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과 이윤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직장에서의 노동에 대해서만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리적 기능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의 일을 담당하게 된 여성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조적 노동력으로 평가절하되었고, 여성의 1차적 자리는 가정이며, 1차적 역할은 가사노동으로 간주되었다.

현재 약 50%의 여성들이 주부로서 가사노동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핵가족 하의 전업주부들은 ‘공적인 자아’를 체험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정은 인간관계로는 이웃도 모르고 지낼 만큼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운영 메카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주부는 소비자로서, 가게 경영자로서, 자녀양육 담당자로서 너무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며, 주부 혼자 감당하기가 벅하다. 그러면서도 주부들의 노동은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정신적으로 평가될 뿐, 경제적 자립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구조적 억압— 남편의 운명에 종속되는 삶, 자기 실현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도 예비주부라는 전제를 가지고 직장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기혼 여성들도 직업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도 전업주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순과 무관하지 않다. 즉 ‘여성의 일차적 역할은 가정’이라는 사회적 관념이나 또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하여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2등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성 역시 희생자이다. 남성들도 거대한 직장구조 속에 매몰되어 가족생활과 떨어져 있다. 가정은 자고 가는 여관이고, 자녀양육과 교육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삶 역시 남성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다.

2) 가정영역의 무시는 생활영역, 지역사회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상

여성이 담당하는 가정생활 영역은 사적 영역으로 무시되어 왔으며, 정치적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즉 제2세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모성에 대한 보호, 어린이 양육, 학교 교육,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복지 시설, 쓰레기의 처리, 깨끗한 공기와 물의 보급, 도시가스의 보급, 버스노선 (특히 마을버스), 병원 또는 보건소의 운영, 그리고 동사무소, 시장의 위치와 운영... 이 모든 것이 여성들이 가정생활을 운영하면서 당면하는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생활영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이야말로 생활자의 요구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실현해야 할 생활정치 실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이다.

개별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생활영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남성들도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는 지금까지 주인이 없었다. 앞으로 새로운 사회의 가치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고 할때, 여성들은 지역사회 운동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은 핵가족의 문제를 지역사회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 더 이상 핵가족이라는 폐

채원 영역으로 일손을 더 끌어들이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된다.
가사노동을 지역사회로 가지고 나와서 공동화 시켜야 한다.

예) 개별 육아 ---> 공동육아 (탁아소 시설과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
노인 돌보기 ---> 노인 복지 시설 운영, 노인을 위한 의료 복지의 확대
소비재의 개별 구입 ---> 생협 통한 공동 구입
생수 사먹기 ---> 깨끗한 수도물, 우물에 대한 공동 대책

여성들은 사회로 더 나가야 하고, 남성들은 가정과 지역사회로 더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실현하는 지방자치를 요구해야 하고, 대안운동을 펴야 한다.

4. 지방자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자치는 주민주권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주민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에 개입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소임을 잘 담당할 주민조직, 주민운동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오히려 여러종류의 관변조직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앞서 말한 지방자치의 관점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건강한 주민조직, 여성조직의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조직, 주민운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1) 지방의회 후보전술의 의미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후보전술은 이것을 가장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선거는 가장 치열한 경쟁이다.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조직을 만들 수 있다.

지방자치의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원과의 연대체계를 가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직도 비민주적인 우리의 지방자치제 아래서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가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때 의원을 통한다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의원 역시 주민들과의 협력 체제를 가질 때, 훨씬 힘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 진출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세우고 있기 보다는,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단체나 주민단체들은 운동을 통해서 발굴된 사람을 진출시키고, 함께 활동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관점, 운동의 관점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지방 의정시기와 주민참여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요구들을 행정 서비스로 감당할 수 없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 행사등을 함께 펼치는 경우도 많다. 지역의 주민단체들은 과거 저항적 참여 일변도에 익숙하였는데 동조적 참여와 자조적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몇몇 단체들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교육 기회로 삼고자 의회 방청을 통한 의정시기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는 의회방청단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실제적인 의정 감시활동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정 감시는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예산의 사용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보고되는 일과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주민들이 사전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권력의 사정은 소상하게 매일 9시 뉴스, 신문등을 통해 알려지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소식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 알 권리부터 요구해야 할 것 같다.

지역사회 안에는 크고 작은 여성, 청년, 지식인, 의료인, 노인 조직들이 있고, 학사, 의료인, 각양의 협동조합운동, 상담활동 조직, 생활협동조합등의 조직들이 있다. 이런 조직들이 평상시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과제해결을 위해 과제별 조직을 만들어 함께 대처하는 그러한 조직 형태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5. 20%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필요성과 의미

1) 여성의 정치참여의 실태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꼭 여성후보여야 하는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좋은 사람만 되면 되지 않은가?" 여성활동가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여성정치 참여의 실태를 안다면, 이 말을 할 때 훨씬 신중해야 할 것이다.

1991년도 30년만에 모처럼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처음 실시된 기초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수는 불과 40명 뿐이다. 이는 전국 시, 군, 구 의회 의원 정수 4천 3백 4명의 0.9%에 해당하는 수이다. 그나마 이들 여성의원들은 거의가 특별시, 직할시 등 대도시 출신이고, 제주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지방에서는 한 사람의 당선자도 없었다.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는 총 866명 중 여성의원수가 8명이다. 역시 0.9%이다. 동장은 어떠한가? 지난해 7월 1일자로 여성동장 22명이 새로 임명되었다. 전국위 동장은 2천2백49명이다. 여성동장도 마찬가지로 0.9%이다.

국회의원은 전체 299명중 4명이 여성이다. 1.3%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은 없고 모두 전국구 의원들이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국회 참여비율이 15%이상인 국가는 23개국에 이르고 있는데, 조

사대상국가 1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110위 였다는 것만 보아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경제활동의 40%를 참가하고 있고, 교육수준에서도 남성 못지 않은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의사결정권자'의 자리에 오르는 데는 온갖 방법의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훈련된 지도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주위를 둘러 사람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런 핑계는 어떤 조직에서도 말쑥히 지는 이유이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노조에서도, 남녀가 함께 하는 운동조직에서도 여성들은 언제나 뒷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지도력으로 키워질 수가 없었다. 이 점에 대해 여성활동가들은 그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가?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키우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여성운동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남성 후보를 제쳐 놓고 지지할 수는 없다"는 말은 인정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졌는지, 그것을 증명할 만한 삶을 살아 왔는지,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이 기준에 따라 비록 여성이라 할지라도 좋은 후보가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남성후보들 중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생활 에서도 그러한 관점을 실천해왔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여성 할당제

현재 여성운동계는 '여성할당제 실현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하였다.

그 근거는 지방의회나 국회는 남자만의 의회가 아닌, 국민 전체 또는 주민 전체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지역 내의 성별이나 직업별, 사회 계층별로 골고루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성 유권자가 차지하는 수 만큼, 즉 절반까지는 못가더라도 20-30%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할당제는 사회구조적 제약에 의해 심히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계층에게적극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을 완화시키려는 조치이다.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흑인과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입학, 직장에서의 할당제를 법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할당제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비례대표 할당제와 공천 할당제등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야 모든 정당이 20%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를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는 할당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할당제의 실시가 정당이나 선거에서 도입되면, 앞으로 직장, 승진, 훈련 등에서 까지 할당제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이 '의사결정권자'의 자리에 접근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당제가 실시되면 아마도 보수적인 여성계 인사들이 할당제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진보적 여성계에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여연이 제시한 20% 지방의회 달성은 정당들이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할당제의 도입 없이는 "마의 0.9%"를 넘기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성참여의 불이 일어 나면서, 좋은 여성들의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여연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특별사업의 과제와 효과

1) 과제

- 정당이 20% 여성할당제를 채택하도록 범여성적으로 노력한다.
- 여연이 직접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후보발굴과 선거과정 및 선거 이후의 의정시기 활동의 모델을 만들도록 한다.
- 여성들에게 지방자치와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한다.
- 지방자치와 연관한 지역 여성과제의 개발
- 공정선거 감시운동

2) 기대되는 효과

-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
- 남녀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
-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제고
-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 여성운동의 강화

7. 맺음말

냉전시대 이후 변화하는 사회환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생활정치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지금까지 추구해온 민주화의 내용을 채우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동체, 창조성과 개성,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지역과 중앙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도전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는 권력의 분산과 운영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내용에 간과되기도 하였다. 오늘 강의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규명해보고자 했고, 이러한 정치세력화의 활동의 효과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아마도 이번의 실험이 끝나고 나면 지방자치와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의 폭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리라 믿는다.

<기획논단>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불과 며칠전이었던 9월 13일(화), 지방자치관련연구소협의회(준)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공동주최한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내용을 여러 회원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과, 보건사회부에서 최근 제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기재한다.

1. 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 /

최현숙(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2. 보육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

이기우(인하대 교수)

3. 보육사업의 내실화, 확충방안 /

보건사회부

38-1564 (여성회)

■ 기획1.

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

최현숙 / 본 회 회장

1. 들어가면서

개별적으로 「아이키우기」의 관심과 고민이 부모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단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뤄지는 「아이 키우기」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이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하찮은 사안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다.

개별 양육이 명백하게 한계를 드러나게 된 것은 이 시대 부모 모두에게 다가온 현실 조건이다. 대가족의 붕괴,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급증, 이 모든 사회적 변화는 필히 개별양육 책임하에 아이 키우는데 있어서 큰 공백이 생겨나게 되며 이러한 간격이 크면 클 수록 아이들의 양육환경 파괴가 그 도를 지나쳐서 아동 생명을 위협하기 조차 한다. '90년도 해영, 용철 남매의 질식사 사건이 바로 그 것이다.

개별양육의 한계속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사회적 육아이다. 여기서 「탁아」는 그간 일반인들의 상식적으로 사용하던 예전 행정 용어이고 제도의 변화속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한 행정 용어가 「보육」, 사회적 육아의 철학적 개념이 「공동육아」이다. (본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용어인 「보육」을 사용하기로 한다.)

보육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두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다. 하나는 좋은 보육제도의 실현이고 그 내용은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는 양적 확충과 영리성을 배제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 본다. 또 하나는 올바른 보육관과 좋은 보육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나야 한다는 질적 담보의 실현이다. 그리고 보육사업이 인간에 대한 구체적 사업이기에 이러한 목표 실현이 행정편의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정부, 운영자, 보육 교사 뿐 아니라 부모 이하 지역주민,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실현의 목표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비용이 어느정도 지불 될 것인가, 어떤 보육관이나 즉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나 혹은 다같이 사는 법을 익히는 공동체성을 최우위에 두는 보육이나 등등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겠지만 이는 지속적인 토론과 실천속에서 사회적 합의와 목표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으로 여기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보육에 관련한 그 어떤 것도 현재의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단 한명의 이의가 없이 보육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 이하 많은 보육 관련 단체들이 그간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견지하고 활동해 왔다.

미온적인 국가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법제정 요구, 청원, 진정서, 제안서 발송, 요구 대회, 서명작업, 각 당에게 제안하기, 대통령선거 공약에 넣도록 압력하기, 법 개정 작업 등 한국 보육현실 개선을 위한 작업들을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신정부가 여성노동인력 창출의 필요성과 국민 복지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려는 의지 속에서 다른 복지 부분보다 특히 보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국가의 보육정책이 이전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것은 아직 보육현실이 피부로 느낄만큼 구체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의지와 구상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작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보육을 실천하는 그룹들이 보다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는 구체적 실시여부에 관여하는 일이다. 즉 '보육실현이 이뤄지는 현장, 지역,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정책, 개선점, 지방정부의 지침, 의지, 지방의 여론, 지방 주민들의 구체적 의사개진, 지방위원의 활동 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여기서 '지방자치속에서 보육 활성화'라는 토론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그간 보육사업의 진행과정을 정부 시책과 민간참여의 관계속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최근 제시한 정부의 보육정책과 보육실태를 살펴보고 마지막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할일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정부 보육 정책의 변화와 민간의 대응

한국의 보육현황은 두시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저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증하여 보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국가차원의 대응이 미진하여 결국 보육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었던 80년대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뒤늦게나마 국가차원에서 보육제도가 실시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최근 3년 반의 시기이다.

1)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기까지 (1980년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구조의 재편과 연소 노동력의 학력 증가, 생계비의 급증 등은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대거 유입시켰고 이들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하는 어머니의 급증은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하던 기존의 방식을 전환하고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요구를 높이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이전의 시기인 70년대 말까지 아동보육정책이 내용없는 미봉책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82년, 제5공화국은 소위 교육과 탁아 기능의 통합을 꾀하면서 '유아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새마을 유아원'을 대거 양산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육기능이 전면 상실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은 특히 저소득층가정 자녀들이 그대로 방

치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이 도시 빈민지역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생적으로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게 만들었다.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여성들 또는 사회운동단체와 종교단체들의 지원속에 곳곳에 비영리 민간탁아소들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 탁아소들이 지역의 문제와 아동교육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위해서 85년에 '지역사회아동고사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87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로 개편되면서 개별적 고민에서 나아가 탁아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여론화 작업등을 전개하게 된다.

1989년 9월 정부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여 탁아기능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활된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사실 보육수요라 할 수 없는 극빈층의 자녀 수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공립 탁아소 몇개소를 세우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었다. 이러한 비현실적 발상은 실제 탁아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강한 규제조항은 기존 민간 탁아소를 불법화하여 폐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었다. 이에 지탁연은 시행령 개정에 전면 반대하고 독립적 탁아입법을 요구하는 활동을 개시한다.

먼저 7개 단체가 '탁아입법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89년 11월에 '탁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여성단체 연합'의 이름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동시에 공청회, 국회의원 면담, 거리서명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교사와 부모의 결집력을 높이고 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활동한다. 이러한 활동은 탁아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나, 3당 통합과 함께 탁아법은 다른 정치 관련 의제에 밀려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 이어 민자당이 출현한 후 지탁연을 포함한 탁아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내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탁특위)를 결성, 탁아입법요구를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입법요구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1990년 3월 어머니가 일하려 나간 사이 남매가 잠긴 방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생겼고 탁특위는 해영, 용철 남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위령제를 치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민자당은 별도의 독립법이 필요없었던 입장을 바꾸어 서둘러 독립적인 탁아입법을 준비하고 90년 6월에 '영유아보육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것과는 달리 민간탁아소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한 신고를 강행하는 것에 반발하여 신고조치 철회에 대한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고 거부 및 탁아법 제정을 위한 가두 서명 대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하여 자모들과 교사들은 짧은 기간동안 5만 여명의 서명을 받게 된다. 민자당은 그해 11월, 국회에 영유아 보육법(안)을 상정하는데 여성계, 유아교육계, 노총, 탁아관련단체 등이 그 졸속성에 따른 거센 반발을 했음에도 충분한 검토도 없이 통과시킨다. 결국 이 법안은 1991년 1월 공포되어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입법과정에서 비록 국가의 공공 책임을 명시하고 보다 장기적 대안을 갖는 법안 마련에는 실패하였지만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독립된 형태의 법으로 전환시키고 일정한 요구내용을 관철시키는데는 성공하였다.

2)법제정 이후 (1991년-현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이후 한국의 보육상황은 80년대에 비해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불과 4년 전 만해도 보육시설이 200여개소에 5000여명의 아동이 보육되었다면 94년 현재 한국의 보육시설은 6,000여개소에 20만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아울러 오랜기간을 두고 풀어나가야 할 제반 문제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지탁연은 공공제도 확보, 질적담보라는 두 목표중 우선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두었다. 이를 위해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되어있는 현행법을 '공동부담'(국가, 지방정부, 기업, 부모)으로 바꾸고자 법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하였다. 또 한편으로 예산 책정이 전혀되지않은 민간, 가정보육시설(그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요구사업을 주요 실천 내용으로 세웠다. 재정 지원 요구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양 측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막 열리고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추어 보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감을 적극적으로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으며 내부 토론회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거의 희박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 지역적 차등이 고질화 될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수준이 너무 저급하기 때문에 지방의 좋은 사례를 다시 전체화 시키는 것이 목표 달성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역량을 모으고 민간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구 별 민간보육시설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벌어나간 활동들을 다음과 같다.

92년 4월, 지탁연은 지원요구를 위해 소속 보육시설의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들의 직업, 연령, 월 평균 소득, 주거 형태 등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지원확대에 관한 제안서를 보사부에 제출하였다. 이어 6월 21일에는 '우리들이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라는 구호아래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인천시에 있는 지탁연 소속 탁아소들이 시 의원 교섭과 행정담당자 등과의 면담, 청원, 질의서 발송, 의회 방청, 설명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결국 인천시로부터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급을 얻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방 행정을 향한 민간보육의 지원 요구가 정당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사례는 민간보육시설 연대로 이어져 다른 지역의 활동을 고무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10월에는 '사회복지예산확대'라는 통일적 범주속에서 연대구조를 갖게 된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에 참여하여 대통령선거 시기에 공동활동을 하였다. 비록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사회복지 공동의 문제 인식과 그내에서 보육의 영역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93년에도 전년도 활동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먼저 법개정 사업은 4월에 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정부관계자, 학계, 국공립 보육시설 관계자 및 민간보육시설 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9월에 민주당 이해찬의원의 소개로 개정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사부로부터 '모법개정은 시기상 너무 빠르다 그러나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하위법령 및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12월 초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쌀개방문제로 인해 연기되어 법개정안은 현재 계류중이다. 94년 7월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민간보육시설 지원, 조례제정권 등을 내용으로 보사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지원요구를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6월부터 보다 구체적인 보육현실 이해와 민간보육의 요구를 수렴하기위해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9월 '보육사업발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현재 민간탁아소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한 양적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사업으로서 민간탁아의 영리를 막고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경과조치를 남겨두고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용도변경에 관한 지적 등이었다.

지탁연은 93년 7월의 면담과 9월의 비공식 간담회에 지역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요구한 내용은 표준 단가를 유지할 것,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의 지원요구와 우선 교재교구비, 간식비 등의 지원, 건물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용자나 공공시설 이용 허가, 영아전담운영 인정, 용도변경에 대한 대응마련 등을 비롯한 13가지 항목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94년 지침 최근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보사부가 대부분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한국의 보육사업이 영리사업이 되지 아니하고 공공 보육으로 자리매김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나 최근 민간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내용이나 국민연금 기금 장기용자 실시 등은 민간보육시설과 이용자 부모들의 그간의 노력의 댓가이고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93년 연말에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가 일괄지급된 것은 비록 1회용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원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여겨진다. 94년 7월에 실시한, 국민연금기금을 동원하여 민간, 직장시설에 장기용자를 실시한 것, 그리고 94년의 면담에서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지원항목을 본예산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은 미미하지만 공공보육의 의지와 고무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청신호라 하겠다.

민간보육시설 연대사업은 현재 인천시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이하 민보련)을 필두로 안산시와 서울시의 구로구, 영등포구, 성동구, 강서구, 군산시, 대전시, 마산시 등지에서 연합회를 결성하였고 부천시 등에서는 준비모임단계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시구 별 민간보육시설 연합회들이 이후 지방자치와 공공보육 확립이라는 맥락속에서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보육운동발전의 주요한 관심이자 관건이다.

현재 시행령(우리측은 모법에 요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육에 관한 조례권 확보는 일부의 반발과 지방재정 취약도에도 불구하고 공공보육 확보를 위해 가져야 할 중요한 무기이다.

3.94년 정부 보육 정책 및 보육 실태

정부의 최근 보육정책을 '94년 보사부 지침과 최근 내실화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사부가 추계하고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는 100만여명으로 1994년 6월 현재, 보육 공급수준은 보육시설 6,371 개소에 20만 7천 233명의 아동이어서 현재 약 20%를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자라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먼저 97년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등에 정부지원으로 2,036개소의 시설 설치, 운영할 계획(94년 지침)이었으나 최근 200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현재 1,600개소에서 4000개소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4,400개소에서 22,000개소로 확충 유도할 계획(94년 7월 내실화 방안)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보육사업 초기(91년에서 93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대상아동의 10%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90%의 아동을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에 맡도록하겠다는 발상에서 상당히 발전된 계획이라 본다. 어렵잡아 최소한 30%정도의 아동이 국공보육시설에 위탁된다는 것이어서 일단 긍정적이라 보여지며 문제는 이 계획의 실현여부에 있겠다.

< 보육대상 아동추계 >

(단위:천명)

구 분	대상아동			
	1994	1995	1996	1997
0-5세아동 1994	3966	3977	3987	4002
취업모의 0-5세아동	1792	1810	1828	1846
보육대상아동	1011	1021	1031	1041
저소득층 아동	82	84	87	91
일 반 아동	929	937	944	950

- '94년 보사부 지침 -

보육대상 아동수는 101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보육시설의 부족을 제기하는 반면 실제 운영자의 경우 종일반 아동수의 부족으로 운영난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기때문에 보다 정확한 대상 아동수가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적 수요 공급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설치자들에게 정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택연이 제시한 저소득층의 범주는 현재 수준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의 가정이고 특히 방 1-2간의 전월세자들, 생산직, 불안정 고용 가구를 포함한 요구였으나 정부의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최근 모자가구 세대로 확대된 정도이다. 따라서 공단 빈민지역에서 어렵게 맞벌이 하는 가구가 전혀 포함되지 못한 실정인데 여기서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감면하는 아동별 지원이 채택되었다. 현실적으로 생활보호자의 자녀가 보육대상에서 없는 것은 물론이고 80만원 미만의 가구 또한 적기에 적은 보육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예산이 나온다. 이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대상자가 적어서 지급을 못하는 반면 전라도 지역에서는 대상은 많으나 제정이 없어서 국공립 시설 이용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 기준 미달) 여기서 보육관련 빈곤선, 지원선이 지역 실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 필요하겠다. 서울시 일부 구에서 감면 기준을 90만원으로 과감히(중앙기준에 비해) 상향조정한 것 등은 좋은 사례다.

'94년 보육예산을 보면 총 1,188억원으로 이를 국공립보육시설만(민간법인 일부포함)의 인건비, 시설보장비 등으로 지원 책정되어 있고 아동에 대해서는 7만여명의 아동(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및 가구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의 가정)에게 보육료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일정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을 장려위하게 확충하고자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전체 보육시설의 90%를 민간보육시설에 의해 확충하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93년도 까지 무정책으로 일관하다가 '94년도에 들어 비로소 방침이 생겨났다.

최근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1,500억원을 장기융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행할 계획에 있으며 도시저소득층 지역, 농어촌지역 시설에는 교재교구비 등 일부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현재 민간보육시설 설치에 가장 큰 골치거리인 용도변경문제를 개선하여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시설등에 설치시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하거나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중인 것 등이 그러하다.

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계획으로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최우선으로 융자 실시할 계획이며 정부예산에서 교재교구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장보육시설 설치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사업장을 현 여성근로자 500인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시행령 개정안)이며 반면 사용자의 부담을 현 운영비 80%보조에서 50%로 낮추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그 외 2세미만 영아보육이나 전일제 보육시설 운영유도 및 우선지원, 시설 규모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차등지원 실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세부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94년 7월 9일 확대경제장관 회의시 노동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여성인력 수급원활화 대책 일환으로 기획원 보사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보육시설 설치 확대운영에 관한 3개년 계획을 94년 8월중 수립추진에정속에서 나온 계획안들이고 이를 위한 첫단계

사업으로 8월중 시행령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9월 입법예고, 10월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11월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12월에 개정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

'94년 들어서 신정부는 여성취업인력 창출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맞물리는 영역인 보육사업에 대해 다른 정권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처음 지침을 펴낸 1991년도에서 '93년도까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2000년까지 2000여개소였으나 94년 7월 '보육사업확충, 내실화 방안'에 의하면 읍, 면, 동 당 1개소 이상으로 설치확대 4000개소(2400개소확충)로 확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방침이 생겼다는 것, 보육의 질적 고양을 위해 보육위원회와 정보센터의 기능강화를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볼 때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비록 목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장기적 목표나 중기적 목표나 차이가 있겠고 이에 따라 비판의 소지는 있겠으나 현재는 이러한 계획의 실시여부를 바라보면서 더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는 이러한 방안과 계획들이 얼마만큼 조속히 실현될 것인가 또 어떻게 올바른 방식으로 집행이 될 것인가에 있다. 보사부 직원과 구청직원의 현격한 인식의 차이, 지방의 자율권 행사가 부재했던 역사, 형식적 위원회 모임 관행, 그 무엇보다도 보육공무원의 절대수 부족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현재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을까가 염려된다. 일본 오오사카 시청의 보육담당 공무원이 64명인데 비해 서울시 보육담당공무원은 2인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마도 담당직원은 서울시의 공적 보육 확립을 위한 창의력 발휘는 커녕 보고서 쓰고 서류 정리하기에도 1년이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보육예산 확보의 문제일 것이다. 공공보육을 만들어내려면 현재의 보육예산이 월등하게 증가해야 할 터인데 예산에 대한 획기적 조치없이 전년대비에 의해 예산 편성이 된다면 모든 방안을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는 이의 시행여부에 대한 변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제 민간의 활동은 그것을 직시하는데 있다. 즉 지난 3년간 보육정책수립에 민간의 요구, 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의 실현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감시하고 구체적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 본다. 지방자치의 장에서 올바른 보육실현을 위한 시설운영자, 교육가, 보육교사, 부모, 그리고 주민들의 다각적인 활동이 본격적으로 요청되는 시기인 것이다.

4. 앞으로의 과제-지방 활동을 중심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은 이제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생각된다. 특히지방자치 속에서 보육활성화를 추구하는 활동은 이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려는 전체적 과제와 공공보육의 구체적 발전이라는 양측에 연결되는 고리로서 이후 보육실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것이 지방보육사업의 중요한 목표이고 과제인가는 이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그간의 사례와 활동속에서 얻은 단상들을 적어보겠다. 지방자치의 전형이 창출된 것도 보육 사무가 지방사업으로 잘 진척된 것도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면 이 과제 실현의 어려움은 일단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간의 몇몇 실천과 이제 만들어진 추진세력들의 역할 확대의 가능성속에서 오직 지방보육의 올바른 실현이라는 무한한 책임성에 의거하여 힘차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속에서 자율적 보육사업 추진의 의의 및 과제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중앙차원에서 정책 개선 및 예산의 확대요구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재의 조건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가, 시책 개선의 여부는 무엇인가, 국공립 위탁선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기준인가, 지역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는가 등등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고쳐나가고 이를 공개적으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비용 확보를 위하여 중앙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방예산의 별도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불용예산을 보육비로 지급할 때 정확한 원칙과 지역적 합의를 수렴하여 공식화할 필요가 있겠다. 일례로 모 구의회에서 다른 부분의 낭비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그 구내의 보육시설을 위해 사용코자 하였는데 아무런 지원 근거가 없어서 유야무야 된 것이 있다.

원칙과 공식성은 조례제정권에 있다고 본다.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조례제정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간의 실천사례에 의하면 광주시의 경우, 보육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여서 조례제정을 할수 없다는 지방 공무원의 입장표명이 있었던 반면 부천시의 조례제정안을 공무원이 제출함으로써 통과된 바있다. 현재 보사부는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자 하나 지방공무원측에서 반발하는 실정이다.

셋째는, 앞서 말하였듯이 보육문제가 한꺼번에 도출되고 있으며 지역적 편차나 특성 등이 있기때문에 구체적 현실에 부응하는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고 따라서 보사부 지침만으로는 현실과 조율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에 지방별로 보다 세부적 합리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공론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의원의 적극적 역할, 지방공무원의 숫자 확대, 보육위원회의 활성화, 지방 민간보육단체의 육성,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등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보육 활성화는 주민들의 직접적 수혜, 신뢰받는 지방정부상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정시의 경우, 91년 보사부 지침을 보면 전국 시도중에서 보육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된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육운동가들의 절기찬 요구와 시의원의 비중있는 역할, 지방 공무원의 적극적 활동 덕분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현재 전국적 수준에서 가장 나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 되었다. 이는 93년 현재 보사부 지침에 의한 국공립 시설지원, 80만원 미만 가구의 아동지원 외에 시비 193백만원을 조성하여 전 어린이집(129개소)에 아동 간식비, 시설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수용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한 바있는

대 민간보육시설 지원이 가능한 것은 보사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데 비롯된다.

94년에도 국공립시설, 월 80만원미만 가구의 자녀 지원, 영아반 추가시 추가지원이라는 기본 지원외에 국공립 시설확충을 대규모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 6개를 아파트단지내에 설치(5억으로 큰시설 한곳을 만들면 200여명의 아동을 보지만 같은 금액으로 6개의 소규모시설을 확보하여 많은 지역의 더 많은 아동을 돌볼수 있다는 계획)하여 민간보육 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창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과경상의 무리가 있어서 여러가지 안을 세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안으로 나온 것은 예년 기준계획, 2안으로 나온 것은 종사자 장려수당, 3안은 무자격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이다.

이러한 것이 인천시 민간시설의 운영 정상화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기왕에 조성된 시비가 시설 지원이 되는 국공립과 지원이 없는 민간 모두에게 나눠지면서 결국 규모가 적은 민간시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보사부 지침 수준에서 한 치도 나아가려하지 않는 지방 관행을 빗대어 볼 때 대단히 고무적인 사례라 여겨진다.

지방정부의 보육에 대한 집행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지원 것이다. 한마디로 서울시의 경우 보육시책은 국공립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보사부 지침외에 특별히 하는 일은 보육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치구비로 부모부담을 일정정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2만원 정도) 단 국공립 시설 이용자에 한해서다. 자치구비로 특별지원을 하는 경우 내용은 앞서 말한 간식비 지급과 자원 봉사자 수당인데 이 또한 국공립시설 내지는 구립시설에 한정된다. 서울시 보육위원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민간시설 지원을 요구해 오고 지원기준의 조정을 제기해 보지만 언제나 요지부동이다. 좋은 얘기라는 반응 외에 더 이상 진척이 없다. 서울시에 있는 많은 민간시설과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약간의 조치라도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면 법인을 만들라는 답변뿐이다. 이는 재정 능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나아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지원을 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다. 바꿔 말하면 서울시 보육을 대변하는 지방 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노력이 저조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적으로 의원활동에 있어서 보육활동은 동네에 국공립 시설 하나를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실정인데 보다 전체적인 모습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기를 바란다. 보육현실을 파악하려면 그간 보육위원회의 자료 및 보고서를 보면 잘 알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시, 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본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태도속에서 어떻게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민간시설의 준공공화,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마련 혹은 촉구 등을 펼쳐나갈 것인가가 이제 부터 해야 할 일이다.

달라진 상황과 조건속에서 새로운 협력자들을 찾고 힘을 합쳐 새롭게 대응하여 나갈 때 보육의 전망이 밝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의미있고 힘받는 자리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이끌 것이다.

■ 기획2.

보육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이기우 / 인하대 교수

1. 문제의 제기

노동능력을 갖춘 주부가 일자리를 갖기 위해 가정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어린이를 어떻게 돌보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많은 주부들이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린이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여성의 노동능력을 사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경제력의 낭비이며 여성 직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한 인격의 실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린이를 키워놓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여성은 갖추고 있던 전문적인 능력이 이미 쓸모없게 되고 새로이 능력을 구비해야 하기 위하여 별도의 준비를 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활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어린이문제 때문에 기업의 일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은 사실이다. 말하자면 어린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도 어린이를 친가 혹은 시부모에게 눈치를 봐 가며 맞기거나 파출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이들에게 유고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들의 부모는 숙수무책이 된다. 특히, 파출부에게 어린이를 맡기는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불안하며 특히 교육적인 입장에서 미덥지 아니하다. 부부가 모두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에 어린이는 적지 않은 경우 축복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만다. 어린이 때문에 여성의 사회활동이 봉쇄되고 또한 부모의 사회활동 때문에 어린이가 방치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한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지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탁아문제를 공공의 업무로 재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적, 재정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법상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이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수용능력은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사실에 가깝게 말한다면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는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은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영유아의 보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법제도도 한가지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영유아의 보육문제는 더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민간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는 영유아보육법상의 규정이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건사회부에서는 보육사업이 국가사무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독자적인 규율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충분한 자원을 마련하여 스스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대하여 조례제정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업무를 조례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사무에 관하여 조례제정권을 갖는지, 어느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권을 갖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는 보육사무가 어떠한 성질의 사무인지를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전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제정권을 갖는 경우에 어떠한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것이 검토되어질 수 있다.

2. 보육사무의 법적인 성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는 우리의 법체계에 의하는 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어진다.¹⁾ 보육사무가 어떤 성질의 업무로 분류되는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의 범위, 국가감독의 기준과 수단, 비용의 부담, 지방의회의 관여 여부, 조례제정권의 인정여부가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우선 법률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법률로써 기존의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할 수도 있으며 지금까지의 자치 사무를 국가사무 (단체 위임사무 혹은 기관위임사무)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사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의 입법재량은 무제한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본질적, 핵심적인 업무는 법률로써도 국가사무로 규정할 수 없게 된다.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육사무는 국가사무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다.²⁾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가 국가사무에 속하고 어떤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다른 규정을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동법 제7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설치의 국가사무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된다. 법률은 국가가 어떠한 요건하에서 국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보육시설과는 별개로 자치사무로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제7조 제2항, 제3항은 법인, 단체, 개인,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제7조 제4항에 가정보육시설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1조에는 보육시설의 폐지 혹은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거나 그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인가, 신고 수리 승인을 자치사무로써 처리하는지 아니면 단체위임사무로써 처리하는지, 혹은 기관위임사무로써 처리하는지는 법률의 규정상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분명히 국가적인 성질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무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육사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이며 지방적인 특색이 매우 강하며 업무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주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동법 12조는 일정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인가의 취소 등을 보건사회부장관, 시, 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업무의 귀속을 매우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하여는 인가취소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인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본다면 보사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의 취소권은 국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동법 제19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장학지도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학 지도 요청은 국가사무임을 밝히고 있다.

제24조는 비용수납이 승인을 시장, 군수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무가 자치사무인

2현재 많은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미숙한 입법기술이다. 왜냐하면 이로써 사무의 귀속과 성질이 매우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금부터의 입법은 이와같은 구시대적인 입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 도는... 사무를 처리한다.] [시, 군,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한다.]라든가 [국가는... 사무를 처리한다]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처럼 국가 또는 사무단체...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방식은 업무의 중복을 초래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폐단을 초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는 국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우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업무를 세가지로 구분하는 국가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자치사무로 보는 국가도 있으며 혹은 기관위임사무를 부정하고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만으로 구분하는 국가도 있다.

지, 위임사무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도 사무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반환 명령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보사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제29조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보고 요구와 시설에 대한 조사 및 장부 기타의 서류 검사를 보건사회부 장관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누가 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분명하지 아니하다. 법률이 여러 행정관청을 감독부서를 정하여 놓음으로써 보육시설은 여러 감독부서들에 대한 동네복으로 시달리게 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보육사무에 관한 개별적인 업무는 국가기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국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³⁾ 따라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독립하여 지방적인 수요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7조 및 제22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보육시설의 설치, 운용,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자치사무로써 이를 처리할 수 있다.

3. 보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1)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법률상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주민의

3) 보건사회부장관이 보육시설에 대하여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업무의 배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국회가 갖는 입법권의 배분을 의미할 뿐이며 행정사무의 배분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무의 성질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보육사무를 일괄적으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로 보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보육시설의 설치에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적인 사무이므로 법률로써 이를 국가사무로 규정한다면 그러한 법률규정은 지방자치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서 위헌이 된다. 보육사무의 성질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보육사무전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분권을 실시하는 나라치고 보육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한 나라가 있는지를 반문해보아야 한다.

권리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칙의 제정에는 별도의 법령에 의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주민의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

2) 보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얼마전 광주시에서는 광주 직할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무부와 보건사회부는 이 조례가 법령에 위임근거가 위원회의 설치에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어긋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법령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위원회 설치업무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는 영유아 보육법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도 및 시, 군, 구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시, 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3항은 시, 군, 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시, 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은 중앙보육위원회가 정하는 영유아사업에 관하여 시, 도지사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다. 시, 군, 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 기능은 중앙보육위원회가 정하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하여 시, 도지사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다.

시, 군, 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은 중앙보육위원회가 정하는 영유아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구에서의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입소대상자의 연령 연장에 관한 사항, 비용수납,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유아 사업에 관하여 회의를 붙이는 사항이다.⁴⁾

지방보육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가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는 법률상의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시행령 제3조에서 중앙보육위원회가 영유아사업의 기본방향,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 혹은 시군구 보육위원회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함으로써 시도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시도 혹은 시, 군, 자치구의 자치사무로서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성질은 매우 불분명하다. 비록 지방보육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가 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할 기관을 조직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고 그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보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무는 당해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의 성질에 상관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법률에 조례제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117조

4) 모법인 영유아보호법은 중앙보육위원회가 지방보육위원회의 권한배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이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음이 없이 권한 배분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따를 수 없다.

문제되는 것은 보육위원의 임명에 관하여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임명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⁵⁾은 상위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을 부여하면서 그 임명위촉의 권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그 임명 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위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⁶⁾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광주시가 조례에서 "보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10인과 광주직할시 시의회 10인 추천으로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 단체장의 임명권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보육위원의 임명권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규정한 것이고 단체장이 그 임명절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치 아니하다.

보육위원회의 구성이 자치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임명절차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위원회의 구성절차에도 미침은 물론이다.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히 임명권자를 규정한 것일 뿐이지 지방의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단체장의 전격적인 결정권한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기관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이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다.⁶⁾

보육위원회의 임명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것이 합목적인지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위법이라고 보는 대법원의 입장은 지나치게 편협하다고 본다.

3) 보육시설의 보조금에 관한 조례

영유아보육법 제21조는 보육비용을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생활보호대상자와 보사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사업에 소요

5) 대법원92주93

6) 예컨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공무원의 임명, 승진, 면직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고 있다. 국가의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행정부와는 권력분립에 따라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 결정된 의결사항에 한하여 권한을 갖지만 지방의회는 일종의 행정기관으로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그 권한에 속한다(의회의 전권농성)는 차이를 대법원은 간과하고 있다.

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부담하는 비용과 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4. 보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갖추어야 할 내용

광주직할시에서는 보육사무에 관한 보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보육위원회의설치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및 보조금의 지급등에 관하여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사무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의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의 처리와 예측가능한 행정, 평등한 업무의 처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조례로써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사무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는 먼저 보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는 광주직할시의 조례가 참고가 될 수 있겠으나 보육위원의 절반을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으로 보육사무의 처리기준에 대한 것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탁아시설 설치의무와 최소한의 수용능력(반드시 공립보육시설의 수용능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인이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민간업자나 단체로 하여금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등의 유인책을 조례로써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의 선정, 비용의 수납에 대한 내용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서 이해하는 것은 설득력이 갖지 못한다. 오히려 법률의 규정상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제정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걸음 나아가 입법론으로는 보육사무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국가는 보육사무에 관한 최소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무처리에 대한 감독기능 및 지방자치단체를 인적, 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정신에 부합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켜주도록 노력함으로써 그 존재의의를 찾아야 한다.

■ 기획3

보육사업 확충·내실화 방안

- 보건사회부 -

일반현황

1. 연혁

62년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사부에서 최초로 '탁아사업'을 실시한 이래 그간 교육부, 내무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장해보다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주관부서를 보사부로 일원화하고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

■ 보사부(62-81)

- 아동복지법에 의거 탁아사업 실시(691개소 설치운영)
- 시행령을 개정탁아 사업 근거부활(89.9월이후)

■ 교육, 내무부(82-90)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새마을 유아원 운영(2,000개소)
- 장학지도(교육부)
- 시설운영(내무부)

■ 노동부(87-90)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 도입(87.12)
- 시범 탁아소 21개소 신축계획(12개소 신축지원)

시설기준, 지도감독 등의 다원화로 체계적으로 일관성있는 사업추진 곤란

↓↑

보사부로 통합일원화(90년 3부 장관합의 및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새마을 유아원(1,235개소), 시범 탁아소(21개소)를 모두 보육시설로 흡수, 통합
-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병행한 '보육'으로 확대 발전

2. 보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

구 분	과 거	현 재
기 능 대 상 책 임 비용부담 기대이익	○ 단순보호위주의 '탁아' ○ 빈곤가정의 자녀 ○ 가정과 여성의 책임 ○ 보호자 및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강조 ○ 저임금 여성인력의 산업인력 활용	○ 보호와 교육을 병행한 '보육' ○ 빈곤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의 자녀 ○ 가정, 사회, 국가의 공동책임 ○ 지방정부와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의 책임과 역할 확대 강조 ○ 아동의 건전육성으로 국가경쟁력 배양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가정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3. 그간의 추진경과

- 지난 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보육사업을 보사부로 일원화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역점 추진
- 그간 3년동안 보육예산의 투자확대, 보육시설확충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완화, 보육시설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강구 등 보육시설 확충·내실화 기반구축에 진척

가. 보육사업 투자확대

- 그간 보육사업에 투자한 정부예산은 90년 191억원에서 94년 1,188억원으로 대폭 증가

	90년말	91년6월	증감
- 보육사업(억원)	191	1,188	6.2배
- 보사예산(억원)	11,3921	19,435	1.7배
- 정부예산(억원)	274,557	432,500	1.6배

나. 보육시설의 확충을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

- 보육시설 및 종사자기준 완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2회)
-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내에 보육시설 설치의무화(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 100세대이상 근로자주택 및 임대주택단지내에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건축법시행규칙 개정)
- 개방제한 구역안의 국민을 위한 보육시설 신규설치허용(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등

다. 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 부여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당해 보육시설 취득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함(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필요경비로 인정 손비처리(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라. 보육시설종사자 복지증진

- 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기간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교원자격검정령 개정)

※ 보육서비스 접근가능성 대폭제고

이상과 같이 재정투융자 확대 및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등 정부의 역할 제고와 더불어 보육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로 보육시설이 매년 1천여개소씩 증가하여 보육의 접근가능성이 제고되었음

	'90년 말	'94년 6월	증감
-보육시설(개소)	1,919	6,371	3.3배
-보육아동(천명)	48	207	4.3배

보육시설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94.6)

구 분	계	국공립	민 간	직장	가정
시설수(개소)	6,371	950	2,802	31	2,587
아동수(명)	207,233	70,302	112,547	818	23,566

2. 문제점

가. 정부재정여건상 과감한 투자가 미흡하여 공공보육시설의 조속한 확충에로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해 매년 100개소 정도의 신축미만 지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자비로 시설을 신축하거나 종교시설,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 시설설치시 운영비 미지원으로 시설확충저해
- 현재 예산형편상 신축비 보조를 받은 시설에 한해 운영비지원

* 현재 1,700여개소 공공시설 운영유지에 연간 650억원 소요
(개소당 연평균 41백만원 지원)

나. 보육사업의 성격상 영리추구가 어려워 민간시설 설치미흡

- 현실여건상 민간시설은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시설운영이 어려워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미흡
- 주민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시등 대도시지역은 보육료 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 대도시지역중 저소득층지역,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아 보육료 수입이 적어 대부분의 시설이 적자상태로 운영

다. 직장보육시설 부진

- 시설설치, 운영비 부담이 크고 아동관리에 많은 책임이 수반
- 50명정도의 시설신축, 운영시 설치비용(부지포함)이 3억-5억정도 소요되고 운영비는 월 5백만원 정도 소요
- 공해,소음등 사업장내 환경이 아동보육에 부적절
- 여성근로자가 많은 업종의 경우에도 주부근로자가 적어 사업주가 보육시설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지 못함
- 도시지역의 교통형편상 거주지 인근에 보육시설이용을 선호(86.5%)하고 직장시설을 이용시 원거리에 있는 근로자는 차량구입등 부대비용 부담이 커 이용자가 소수에 불과(현재 31개 직장보육시설의 평균 입소아동 23명)
- 보육대상 아동이 있는 소수의 근로자만을 위해 근로복지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전체사원들의 합의곤란

라.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가능 미흡

- 낮은 보수수준으로 우수보육교사 확보곤란 및 단기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의 자질미흡
- 장학지도 미 실시,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개발, 보급이 미진하여 교육기능 미약
- 보육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 및 지방의 인력은 종전과 같아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효율적 지원, 지도 곤란

-특히 일선 시, 군, 구에서는 아동복지담당직원이 보육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직원은 업무량 증가 때문에 시설의 확충에 소극적임

3. 개선방안

1) 개선방향

- 단순보호위주의 '탁아' 개념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중시하는 아동중심적 '보육'의 개념을 조속히 정착
- 시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보육의 질적수준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여성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조성 및 교육기능 강화
- 보육비용부담을 정부와 보호자 위주에서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공동부담으로 확대
 - 저소득층지역, 농어촌지역 및 공단지역등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육시설을 중점 설치하여 전국 읍, 면, 동 1개이상 수준향상 도모
 - 국민연금기금으로 시설설치비 용자, 설치절차간소화, 세제혜택확대 등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민간의 투자와 참여확대를 유도하며
 - 도시저소득층지역, 농, 어촌지역 등에 소재한 민간보육시설은 시설운영비의 일부를 정부재정에서 보조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보육서비스 수준향상도모
- 보육사업 추진체계는 보사부중심의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되 노동부, 교육부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여 추진

2) 추진방향

가. 시설의 확충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 공공보육시설을 97년까지 읍, 면, 동당 1개소 이상으로 설치 확대

94.6.

97

1,700개소

4,500개소(2,800개소 확충)

- 공공보육시설 확충방법의 다양화
 -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 법인이 부지를 확보 시설신축시 신축비 지원확대
 - 기존 공공보육시설의 증축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 법인이 자비로 시설을 신축하거나 사회복지관, 부녀복지과, 노인복지관, 구민회관, 학교 등 공공시설을 일부개조하여 보육시설설치시 시설개조비 및 연간운영비(보육교사인건비) 일부지원

<민간보육시설의 확충>

- 민간보육시설(직장포함)을 현재 4,700여개소에서 97년까지 21,500개소로 확충 유도
- 민간보육시설 확충방법의 다양화
 - 민간보육시설(직장포함)을 현재 4,700여개소에서 97년까지 21,500개소로

(매년 1,500억 - 2,000억)

- 도시저소득층지역, 농어촌지역 시설에는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신설 추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 일정규모(200cm)이하 민간보육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추진(건축법시행 개정)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최우선 용자 실시
- 고용보험기금에서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계획중)
-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은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직장부근의 보육시설 이용확대
 - 직장과 인근보육시설간에 '시설 이용위탁계약'을 체결, 사업주는 일정비용을 보육시설에 지급하고 해당근로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 이용토록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권장
 - 근로자가 거주지 인근의 보육시설 이용시 사업주가 보육수당 지급 권장
-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민간에 확산 유도 (인근직장 및 지역주민에게도 개방)
- 노동부, 상공부 등과 협조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주의 운영비 80% 부담 의무는 삭제

나.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우수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 보육시설과 유사한 공립유치원교사 보수수준으로 처우개선 실시 (현재는 유치원교사의 71% 수준)
- 보육교사 양성교육 훈련기간 강화 및 재교육 등 연수기회 확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 추진>

- 전문연구기관에 시설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모형개발 의뢰
- 우수보육시설 발굴, 홍보 및 우선지원

<장학지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 개발 보급확대>

- 교육부와 협조하여 95년부터 시, 도별 1개소씩 시범장학지도 실시후 모든 시설에 대한 장학지도 연차적 확대 추진
- 교육부 및 전문연구기관과 협조,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보급

다. 보육사업지원체계 강화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위원회 활성화>

-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보육시설연합회 지부등을 활용, 전용사무실 및 전담인력 배치 등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중앙 및 지방보육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참여확대 및 정책심의기능 강화

<보육사업연구, 홍보사업강화 및 중앙, 지방의 보육사업 전담인력 보강>

- 보육시설 연합회에 연구전담조직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연구, 홍보 사업활성화
- 중앙에는 과단위로 조직확대개편 및 지방에는 '보육계' 설치 추진

3) 관련법령의 개정 및 관계부처간 협조체계강화

가. 관련법령의 개정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94하반기)
 -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이상 ->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80%이상 부담의무 삭제
 -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부의 장학지도 실시 의무화
 -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운영비 일부지원 법적근거 마련
 -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간 강화(800시간 -> 1,200시간)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95상반기)
 - 보육교사 양성교과목 및 교육시간의 재조정 등
- 건축법시행령 개정
 - 소규모 보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켜 용도변경 없이도 보육시설을 자유로이 설치토록 허용

나.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강화

- 경제기획원: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자 확대
- 내무부: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 교육부: 일선 시, 군, 구와 교육청이 합동 장학지도 실시,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개발, 보급,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교육 기회부여 등
- 노동부: 직장보육시설 설치 권장 지도 및 지원
- 상공자원부: 전경련 등 각종 경제단체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권장
- 총무처: 보육사업 전담조직구축 협조
- 건설부: 건축법시행령 개정 협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상시근로자 300인.....	0 안정된 고용인력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설치 범위를 확대함 - 사업장 규모별 현황 계 300- 500- 1,000인 499인 999인 이상 2,206 1,045 761 400
제22조(장학지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 교구의 활용 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한다.	제 22조(장학지도).....	0 영유아에 대한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장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함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 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안) 제24조(비용의 보조).. 1..... 2..... 3.....	0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재교구비용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 - 국고지원 및 미지원시설 현황 계 지원 미지원시설 시설 소계 민간 가정 6,066 1,606 4,480 2,065 2,415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 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제2안) 제24조(비용의 보조) 3. 보육정보센터, 보육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0 보육관련 제반정보제공, 상담기능의 활성화와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 정보센터 및 연구소의 설치, 운영지원 근거 마련 0 국고 미지원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 마련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안)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삭제) (제2안)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 산업경쟁력의 강화 및 노,사간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 비율을 완화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제15조 제1항 관련)				0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양성교육 훈련기간을 강화함 - 양성교육 훈련 운영현황 · 교육기관 및 교육인원: 59개기관, 15,000명 · 교육기간: 1년 · 교육시간: 1,072시간(기준800시간 이상)
과정명	대상	훈련기간	「별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제15조 제1항 관련)	
	양성교육과정	400시간이상		
	보육교사	800시간이상	보육교사 800시간 -> 1,200시간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 교육기간: 2년 · 교육시간: 1,584시간(기준80학점 이상)
보수교육과정	보육시설 종사자	20시간내지 40시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별표3」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3세이상 영유아는 보육교사 1급이 담당토록 규정	0 3세이상 유아의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담당보육교사 기준을 강화함 - 보육교사 1급 · 전문대학이상에서 유아교육등 관련학과 졸업자 · 보육교사2급자가 3년이상 종사경력자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교과목 및 비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0 양성교육이수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그간의 양성교육훈련 실시경험을 토대로 재조정 - 현재 5개분야 34과목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노래마을'을 찾아서 -

어둠산천 타오르는 작은 햇불의 노래

주혜민 / 편집부, 꽃등네놀이방 교사

가슴이 설레었다.

늘 아이들과 관련된 공연장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노래마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말이다. 그 설렘에는 첫 만남에서 오는 풋내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모했던 이를 만나게 되는 극적인 것이었다. 마음은 급하게 서둘러지고 찾아갈 길일을 잡으려 애를 썼는데 그리 쉽게 되지 않았다. 우선 연락처를 찾는 데도 몇일이 걸렸으며 연락이 겨우 된 후에도 길일을 잡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 긴 기다림과 설렘은 점점 마음속에서 포기의 마음으로 변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노래마을'(주소, 전화번호)의 기획실장인 이금로씨와 연락이 되어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여름내 안오던 억수같은 비를 몇일째 뿌리더니 8월 30일의 아침은 맑게 개어 있었다. 후덥지근한 지하철에 몸을 실었는데도 제법 선선한 날씨 탓인지 설렘 때문인지 가는 길이 상쾌했다. 잠실역에서 내려 친절한 버스 운전사 아저씨 덕분에 쉽게 문정동 동사무소까지 찾아가 수 있었기에 기분은 한층 배가되었다. 깨끗한 길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개운하지 못했다. 그것은 길거리를 메우고 있있는 상점들 때문이었다. 어디서 본듯한 외국상표와 함께 들도 보도 못한 상표들로 가득 메운 값비싼 거리가 낮섬을 떠나 우울하게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 땅이라하기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들이었다. 그런 거리들 한복판에 외롭게 등지를 틀었을 '노래마을'을 생각하니 웬지모를 서글픔이 다가왔지만 그나마 이 시대 양심의 한자락이 있다는 자위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조금은 어두운 조명의 지하.

작업실 문을 열었다.

한눈에 봐도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작업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로 시끌벅적하게 인사를 나누고 시원한 물한잔을 얻어 마셨다.

노래마을은 총 8명으로 대표인 백창우씨, 기획실장을 맡고 계시는 이금로씨, 그리고 류승화, 정은주, 손병휘, 이정열, 윤정희, 이수진씨로 구성된 노래집단이다. 우리가 노래마을을 찾았을 때는 백창우씨와 이금로씨는 외출중이라 만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근사한 악기들 틀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래마을은 83년 12월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어 그 이듬해 12월에 본격적인 노래집단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86년에 첫 노래집을 내었다. 그야말로 노래집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노래마을은 여러 모로 지탁연과는 인연이 많았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공연장엔 늘 나와서 공연을 하기 때문인데 그 역사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87년 6월에 있는 성남지역 빈민탁아소를 위한 모금공연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의 노래에는 아이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런 관심 정도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노래마을은 아이들의 문화에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노래 뿐 아니라 연극, 글쓰기 등 아이들 문화 전반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지요. 혹시 '굴렁쇠' 아세요? 굴렁쇠가 바로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아이들 모임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관심이 남과 다르게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자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아이들에 대한 분배를 배당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할 뿐이지요."

이수진씨의 말에 수긍할 수 있었다.

좋은 세상을 만들자면 노래 또한 다양한 활동속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술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길복판에 서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낯설은 악기들이 탁아소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친근하게 다가왔다. 뻔한 질문이 되겠지만 선뜻 왜 노래의길을 가게 되었는지 또 노래마을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건 어려우면서도 간단한 질문이네요. 노래가 좋았어요."

처음 보는 류승화씨였지만 전화할 때마다 통화를 해서 그런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목소리로만 알았던 그의 말이 전화 목소리 같이 간단하고 명쾌하다는 생각을 했다. 류승화씨는 뭔가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계속 말을 이었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래마을의 노래가 아름다워요. 저의 정서에도 맞고, 아름다움을 통해 여러사람들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는데 업으로 느껴지죠."

이거야 말로 뻔한 질문인줄 알면서 하게 되었다.

"생활이 어려우실텐데, 어떠세요."

잠시 조용해졌다. 침묵을 깨고 가장 낮이 익은 이정열씨가 말문을 열었다.

"당연히 예술 활동 또한 생활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은 개인에 가두어 두고 혼자만 즐기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은 어쨌든 숙명처럼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런만큼 윤택한 개인생활보다 문화활동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생활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자부심과 욕심은 계속 솟아나거든요. 승화씨가 이야기했지만 노래에 승부를 걸겠다는 일정이면 되지 않겠어요?"

정말 뻔한 질문에 쑥스러워졌다. 무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정은주씨가 말을 덧붙

붙였다.

"생활상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좀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지요. 서로 구조를 바꿔나가는데 애쓰고 있으니까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정말 이런 질문은 받기 싫어요."

"죄송해요. 그건 아마도 어려운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동지의식에서 스스로없이 여쭙보았던건데. 사실 저희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술의 길은 정말 험하다고 하던데.

그것도 개인의 안락에 가두어 두지 않고 이 시대의 치열한 현장에서, 역사의소용돌이 한 가운데서의 예술은 말이다. 이정열씨의 말대로 숙명처럼 고난을 짊어지는 행위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고난만큼 진실한 삶을 선택받고 역사의 뒤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데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있기에 참 기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얼마나 냉혹한가.

치열하게 삶속에서 뿌리 박아 내리는 예술은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리는 편의점 문화, 우리의 정서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오랫동안 내면에서 흐르는 우리의 것은 고리타분한 구닥다리로 내던져 버린 일회용 문화. 이미 우리 문화의 무풍지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무풍지대의 이 땅에서 작은 바람으로 일어나 새로운 바람을 만드는 노래마을의 힘겨운 작업이 잔잔하게 마음을 출렁이게 했다.

"요즘 서태지와 아이들이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불러 세간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건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지켜보아야 될 거 같은데요. 어쨌든 시도 자체는 좋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중가요속에서 얼마나 역사성이 없으면 이 난리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의 선전성을 보는 듯해 쓸쓸하기도 하구요. 내용물과는 상관없이 번듯하게 상품을 포장하는게 하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지요."

조용히 앉아있던 윤정희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비애가 느껴졌다. 진실을 담아내야 한다는 열정 하나로 치열하게 불려왔던 노래들은 이 사회속에서 아깝게 사장되어 가는 판에 한번의 시도로 엄청난 대중문화를 잠식해 나가는, 너무도 상반된 현상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철저하게 대중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즉 운동의 흐름 한가운데 두고 대중 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죠. 아니 뛰어들어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심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노래가 이 땅의 소외받는 이들 곁에서 기쁨이 되고 아픔이 되고 위트가 되어 불려져야 된다는 중심 말입니다.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 대중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 한줄 될 수 있다면
어둠 산천 타오르는 작은 햇불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래가 이 잠든 땅에 복소리처럼 울려날 수 있다면
침묵산천 솟구쳐오를 큰 함성 하나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윤정희씨의 말에 출렁이던 마음은 어느덧 요동을 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중화는 어떻게 확보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전의 운동가요는 다소 강렬하고 직설적인 음률과 노랫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정표현이 직설적이어서 속 시원했지만 대중화하는데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지요. 노래가 창이 되고 칼이 될 수 있지만 매순간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슬픈 일이라 봅니다. 그러기에 생활 속에 배어있는 언어와 삶의 내용을 운동이라는 용광로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녹여진 것을 노래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때론 칼이 되고 창이 되는 무기로서, 때론 쟁기와 호미가 되는 노동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거지요. 생활로 보내지는 노래 - 바로 대중화의 첫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까?

노래마을의 노래는 특히 가사가 아름답다. 부드러우면서도 미래에 대해 힘이 될 수 있는 계적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한 두사람의 재능으로 만들어지는 노래가 아니라 삶속에서, 여럿이 함께 하는 노동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 민요정신. 이것이 노래마을이 가는 길이다. 창작 노래집을 보면 구전민요, 국악동요 등에 관심을 기울여서 노래를 만들고 있다는게 역력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연구활동과 함께 어느 자리든 찾아 나서는 헌신성을 잊지 않고 있다. 노래마을의 뿌리를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산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흥이 나게 노래를 부르고 함께 어우러져 어깨춤 출 수 있는 노래쟁이. 그 몸짓 구석구석에 사랑과 헌신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 공부방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저희 노래 테이프를 보내 주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주 쉽게 우리의 음악을 예단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해요. 우리의 노래가 제도권내 음악이 갖출 수 있는 자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기준으로 예단하려 들거든요."

무거운 이야기들이 오가자 이에 한 예라도 들듯이 윤정희씨가 말을 받았다. 어쩌면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윤정희씨의 말엔 - 대중화에서부터 한계, 중심, 헌신, 용광로, 그리고 삶의 노래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삶의 현상이 열악한 조건이지만 훨씬 구체적이고 가슴 뭉클하다며, 절대 그걸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모습에서야 구체적으로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제도권의 벽은 엄청나다.

매순간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철통같은 벽과 맞닿았을 때의 그 무기력감.

그러나 역사의 시간을 힘없이 흘러온 정의의 물줄기는 영영 부서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철통의 벽을 뛰어 넘어 흘러왔다. 추악한 행태가 난무했던 부패의 러시아 왕정 - 그들의 궤

락을 위해 불려졌던 노래소리는 어디를 떠돌고 있는가. 울컥울컥. 역사의힘찬 물줄기가 헛구 역질을 해대며 토해냈던 나악한 그들의 노래소리는 말이다.

언젠가 보았던 영화의 한장면이 이순간에 떠오르는 건 우연한 연상은 아닐게다.

칠레의 민중 가수 빅토르 하라.

고통받는 민중의 삶에 뛰어들어 쿠데타군과 노래를 무기로 싸워 죽어간 혁명가.

"칠레 민중의 가슴에 그의 노래가 영원히 살아 울려퍼져듯이 그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저는 일제시대 때 항일투쟁가이기도 하고 음악가이셨던 김혁선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분은 한손엔 총을, 한손엔 악보를 들었던 분이죠."

맘게 개어있던 하늘이 찢어뚫히더니 소나기를 퍼부어댔다. 거리는 무심한 사람들이 소나기를 피하느라 어수선하다. 거대한 기계속에 하나의 나사가 되어 무덤덤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나른함. 여전히 하늘은 휘어짜듯 쏟아 부어대고 있는데 손병휘씨의 이야기가 물 먹은 나의 마음을 한없이 차내고 있었다. 한줌의 햇볕을 찾아낼 것 같았다. 바짝 마른 채청한 마음 자락위로.

그래서 시인의 음성은 들리게 되리라

죽음이 나를 앗아갈 때까지

죽음이 가는 그길을 따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빅토르 하라가 부른 유언적인 노래 '민중의 바람'중에서-



92년 10월. '제5회 어머니 큰잔치'에서 노래공연을 하고 있는 노래마을

좋은 그림책 소개

★ 안거스와 오리

글, 그림 마저리 플랫 / 한림출판사 / 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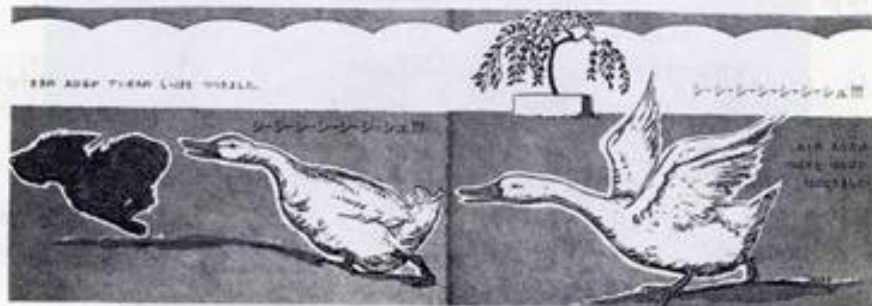
안거스는 몸은 작지만 머리가 큰 강아지로 무엇이든 알고 싶어했다. 눈에 보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 모두.

집 밖에 나온 안거스는 울타리 넘어 "뽕뽕" 나는 소리가 무엇일까 궁금했다. 어느날 현관문이 열려 있어, 밖으로 달려 나가 울타리 밑으로 기어들어가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바로 앞에 2마리의 하얀 오리가 도망가자, 계속 쫓아다니다가 거꾸로 오리에게 쫓기게 되었다. 겨우 집으로 돌아온 안거스는 쇼파 밑에 들어가 꼭 숨었다.

이 그림책은 꼭 두살 먹은 아이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모든 것에 호기심과 하는 모습, 거울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는 표정, 밖에 나가 오리를 처음 만나는 모습은 새로운 것을 대하는 어린 아이의 몸짓, 표정과 꼭 같다.

쫓기던 오리의 반격과 안거스의 도망가는 모습은 그림책을 보는 독자로 하여금 함께 오리에게 쫓기는 것 같고 쇼파 밑에 숨어버린 안거스의 모습은 정말 같이 숨어버렸으면 하는 감동을 준다. 몇가지 안되는 색상과 흑백이 교차되는 각 장이 환화나 펜으로 그린 그림체가 잘 어울린다.

아쉽다면 번역이 잘못되어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 어색한 문장과 단어때문에 자연스럽게 못하다. (3세이상)



좋은 그림책 소개

★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윌리엄 스타이크 글, 그림 / 여인호 옮김 / 5,000원 / 다산기획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은 이가 아프지 않게 잘 치료해주시기 때문에 그의 병원에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드소토 선생님은 작은 동물은 치과의자에 앉히고, 조금 더 큰 동물들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치료해주는데, 생쥐를 해치는 동물은 치료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이가 몹시 아픈 여우가 찾아와 치료해달라고 애원했다. 선생님은 위험하지만 불쌍해서 치료해 주기로 하는데 치료하는 동안 생쥐를 잡아먹으려는 여우의 생각을 안 선생님은 다음날 새 이를 하러온 여우에게 피를 부려 돌려보냈다.

독자는 생쥐 드소토 선생님의 피에 살짝 웃으면서 책을 덮게 된다.

각 장마다 적힌 글과 그림의 구도가 적절히 어울림으로 읽고 그림을 보는데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면 벨이 울려 밖을 내다보니 여우가 서 있었다는 글의 내용과 위에서 내려본 그림의 장면)

동물들의 명칭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치료해주는 드소토 선생님의 모습은 어린이들이 갖는 치과의사에 대한 공포심 대신 친근감을 준다. 치사하고 음흉한 여우와 착하고 영리한 생쥐선생님의 등장은 마치 사람들의 세계를 보는 듯하다. (4세이상)



■ 서평

한국의 탁아는 한국의 눈으로 - 「지역보육운동」¹⁾을 읽고

박성연 / 본 회 교육연구부

「지역보육운동」은 지은이 스즈키 선생의 사회관과 아동관을 바탕으로 일본 탁아운동이 처한 상황을 밝히고 그것에 근거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70년대 이후 탁아운동의 전개와 90년대의 급속한 탁아소의 팽창으로 양의 확대와 질의 확보, 유지에 관건이 걸려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회의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탁아의 관점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하듯 제시한 이 책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이 책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고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로 지은이의 내용을 우리 처지에서 다시 살펴보는 일을 해야 한다. 모두 받아들이야 할 글과옥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지역보육운동」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문화의 차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그 차이의 내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리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일지를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1장 「공터」와 「비밀창고」에서는 아동의 본질과 그들이 살아야 할 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는 존재이며, 놀이의 장소는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공터」이고 공터에서의 무궁무진한 탐색인, 노동과 생활로서의 놀이의 생산물들을 저장하고 집단내의 다른 아이들과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비밀창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아동의 본질에서부터 시작해 그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인 공동보육운동의 필요성을 2,3장에서 제시한다. 2장 「가정을 열려라」에서는 아동환경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세가지 측면에서 조명되고 있다. 첫째는 산업환경인데 산업화된 사회에 사는 연대인들은 「문명의 이기」의 혜택을 누리면서 경쟁적으로 발전을 이루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서로간의 고립을 가져오며 결국은 막스가 제기했던 인간의 소외만을 낳는다고 한다. 지은이가 핵심적인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곳은 두번째 비판점인 가족에 대한 부분이다. 현대의 가족은 더이상 이전의 가족과는 같지 않다. 그것을 촌락공동체의 붕괴, 주부의 고립화 현상을 들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생생하게 예시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신화를 깨고 공동체 지향의 보육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세번째로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에 대한 비판이 이전의 내용과 잘 이어지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할 때 모순된 교육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이다. 적어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동육아는 이전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교육환경에 대한 주요비판은 「지식」중심의 교육에 대한 것이다. 이는 중요한 교육철학이 담긴 문제로, 인간을 정보를 흡수하여 암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무미하고 기계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실천하는 역사형성의 한 주체로 설정하는 시각이다. 인간에게는 물론 인식능력이 있고 그것이 교육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인간은 「창조」, 「예술」, 「실천」의 주체이며 「운동」의 주체로서 교육은 이러한 모든 것을 보듬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바로 공동육아이다. 가족의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라는 넓은 의미에서 가정을 사회를 향해 열어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형태로 다른 아이와 형제 사귀기를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여 장애아와도 함께 자라는 환경을 권하고 있다. 3장 앞으로의 육아에서는 그동안 육아의 역사를 바라보며 공동육아의 맥을 잡고 아이들과 더불어 살며 함께 자라고 생활, 노동, 교육이 결합된 장인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육아의 형성을 역설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도움받을 것인가? 지은이의 한평생의 경험으로 전달하는 감동적인 교훈이 주는 물입의 감정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어떠한 기준으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 지를 생각해보자. 이 책은 탁아의 문제에 관한한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 그러나 시사점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일본의 문화를 읽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야 하며 특히 하나 하나의 용어 속에서 일본 탁아상황의 맥락과 우리 상황의 맥락의 차이를 간파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과 우리 탁아운동의 맥락의 차이는 어떠한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첫째로 시간적 역사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탁아가 운동의 면모를 갖추면서 이슈화된 것은 70년대 이후 정확하게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던 80년대 말에서 현재까지이다. 길게 보아야 2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한국과 50여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의 상황 차이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이 많다. 이는 이후에 제기되는 구체적인 차이점들을 낳는 원인이 된다. 둘째로는 보육형태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책에서 드러나는 것만 보더라도 일본은 공동육아 캐러번, 자택 교대 개방형, 야외 보육형, 어머니 학습회 부속형, 보육소형 등 다양한 형태를 공동육아의 전형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탁아소 중심의 탁아운동 일색이었고 최근에 와서야 정병호씨가 주장하는 탁아형태인 부모 중심의 공동육아운동이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니 하나의 형태만을 가지고 이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형태들을 공동육아라는 한가지 전형으로 모으는 것이 적어도 이 책에서 제시된 일본의 과제라면 여러 형태를 다양하게 벌이면서 상황에 맞는 하나의 전형을 찾는 것이 한국에서는 더 중요한 과제이다. 세째로 탁

1) 주민자치연구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역, 「지역보육운동」, 스즈키쇼조 지음, 주민자치사, 1994

아소와 사회와의 관계, 바꾸어 말하면 탁아소가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가, 보수의 물결에 휩쓸려있는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비교문화적으로 본 유아교육기관」²⁾에서 평가하듯이 일본의 탁아소³⁾는 긴 역사를 지나오면서 진보적 탁아운동을 하는 측에서 주장하고 지향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보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상대적으로 새로 고안된 기관일지라도, 문화변동에서 보다는 문화지속성에서 보다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중국, 일본, 미국의 학부모들이 그들 자녀에게 전수시키고자 하는 가치를 파괴하기 보다는 심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세 문화 모두 가족 크기나 여성노동의 유형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김으로써 중국, 일본, 미국의 학부모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보상적 역할이나 보수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경 외 역, 301p)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탁아운동은 이미 진보를 표방하는 탁아운동에서 전형이 되기 보다는 실패의 전형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상황에서 쓰여진 이 글과 한국의 상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면서 이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탁아운동은 보수화한 일본과는 달리 현재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물론 지탁연 같은 단체가 자신의 색깔을 명확히 하면서 탁아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탁아소 수의 엄청난 양적인 증가가 있으므로 지탁연과 무관하게 한국의 탁아소의 전반적인 모습은 보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사회진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전망을 독창적으로 가져야 한다. 「지역보육운동」을 볼 때에도 단순히 지은이가 아이들을 어떠한 존재로 보는가 사회를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파악했는가에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읽어야 한다. 우리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본과의 문화적 차이는 많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각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여기서는 필자의 느낌을 하나 소개하겠다.

일본에서는 탁아교사를 '보모'라고 한다. 교사들 스스로도, 부모들도 어느 누구도 보모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은 철학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에서 탁아소는 '놀이'하는 느슨한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학력주의 사회에서 '아이들을 놀리는' 탁아소의 교육적 위상은 낮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의 영역인 탁아소의 교사가 사적 영역에서 쓰여지는 언어인 '엄마'로 그것도 '진짜'는 아니지만 대신으로 필요한 '엄마'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여성운동에서는 사적 영역 그 자체의 가치를 알고 그에 걸맞게 위신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사적 영역의 위상은 낮으므로 공공영역의 일인 탁아에서는 표방하는 바에 맞게 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탁아는 명백히 교육의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사회에서 교육적 위상이

2) 이경 외 역, 「비교문화적으로 본 유아교육기관」, 서원, 1993

3) 한국에서는 탁아소라 불려왔고 일본에서는 보육소라 지칭한다. 「비교문화적으로 본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이라고 칭한다.

낮다고 할 때 그와 부수되는 활동이 아무리 선진적이어도 자체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탁아소에서 아이를 돌보아주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고 교사이다. 이 문제는 유아교육계에서는 특히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다. 교사는 교육적 전문성이 갖추어진 경우를 말하고 보모는 단순한 보호를 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회인식 속에서 우리는 보모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탁아소의 교육적 위상은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탁아교사가 보모라 불리면서 탁아소가 사적 영역으로 인식될 때 공적인 영역 확보에 대한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며 결국은 어떠한 주장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탁아소의 '공공영역화'와 '탁아교사'의 명칭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모'라는 이름을 통해 나타난 일본의 탁아문화는 현재의 한국 상황에는 분명한 해악이 된다. 이러한 작은 예가 바로 우리가 「지역보육운동」에서 일본의 문화를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필자의 생각이 과민한 생각이라면 독자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절충하고 현명하게 문화를 읽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 특집 1

일본 보육 연수 기

오윤정 / 본 회 교육부장

본 연합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보육대회 참관자는 8월 1일까지) 일본 오오사카 보육시설을 견학하는 연수가 있었다. 본 회 최현숙 회장을 위시해서 사무국과 현장의 경력교사들 11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의 경험을 여러 교사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글을 실는다.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내용과 사진이 많았으나 일본연수단이 계획하고 있는 비디오 제작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해 "우리네 아이들"에서 미처 다 실지 못한 부분이 자료집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급하게나마 먼저 여러분께 전하는 이 이야기가 현장활동에 많은 자극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로, 일본 보육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익숙치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지난 5월호 「한.일 보육교류의 내일을 본다」편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쉬우리라는 생각에서 달리(주)를 달지 않는다.

지탁연에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가졌던 「한일 보육발전을 위한 심포지움」과 교사교류회의 후속작업으로, 일본 어린이 정보연구센터와 그외 자치노 대판본부등의 8개 단체 초청으로 일본보육연수를 가게 되었다.

7월 24일 일요일, 김포공항에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모인 11명의 교사일행은, 해외여행의 경험과 일본어를 아는 주민자치연구소 이태호 선생님과 동행이라 내심 안심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1시간 30분만에 도착한 오오사카 공항에는 김덕환 선생님, 히구치선생님등 교류회때 뵈었던 선생님들이 마중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일본 오오사카의 첫 인상은 '서울만큼 덥구나, 서울보다 덜 복잡하고 덜 화려하다'였으며, 일본어 간판때문에 비로소 일본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선 우리가 7일간 머물 '생야구'에 있는 숙소로 향했다. 우리가 머물 숙소인 성화복지관은 성화보육소 옆 건물로 작은 크기의 일본집들에 비하면 강당같았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연수 총책임자이신 김덕환 선생님(재일교포로, 성화복지관 이사 이시며, 한일보육교사교류협회 회장이시다)으로 부터 연수일정에 대해 듣고, 전국 야간 보육소연합회행사에 참가하러 떠나신 회장님을 제외한 우리는 즐거운 환영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 '생야'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 거리에 갑순이네 김치, 아가씨주점 등 한글간판이 눈에 띄었다. 6일동안 음식이 입에 안맞아 고생할테니 오늘은 한국 음식으로 많이 먹으라는 김덕환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한국음식점에서 곱창불고기, 포식하고 옷에 온통 고기 구운 냄새를 풍기며 숙소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우리 연수단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다미 방에 누우니, 태풍의 영향으로 시원한 바람이 땀뻘 불었다. 저마다 서울에 두고 온 남편, 자식, 동료교사들을 떠올리다 미안해하며 내일을 위해 모두 잠이 들었다.

7월 25일 월요일, 이틀에 걸쳐 하루종일 보육소에서 실습하는데 오늘이 바로 첫날이다. 4개 탁아소에 4조로 나누어 특성이 조금씩 다른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인들은 직장여성들이 많아 아침식사는 간단하게 혹은 다방에서 모닝구(아침밥)를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닝구를 먹으러 다방에 갔다. 커피와 빵, 계란, 사라다를 먹고 각자 정해진 보육소로 향했다.

나는 대구의 안경숙선생님과 한조로, 통역으로 김덕환 선생님과 함께 '대정구'에 있는 메그미보육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김덕환 선생님은, 메그미 보육소가 있는 지역은 이전의 슬럼가(빈민 지역)를 주택개량 등을 통해 양성화하였고, '오끼나와'라는 섬에서 이주한 주민이 많아 선생님들과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오끼나와'섬과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많을까? 의문이었다.

드디어 메그미보육소에 도착했다. 메그미보육소는 아파트 1층에 있었다. 아파트 출입구와 다른 통로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보육소 앞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단지의 놀이터보다 더 큰 바깥공간과 수영장이 보였고, 건물은 1층의 아파트 몇개를 터놓은 넓은 공간이라 전혀 아파트건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정말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간구성이다.



교사실에서 '운천 기미에' 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과 자료를 받고 보육소의 실내를 돌아보았다. 각 영아와 유아 보육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식당을 갖추고 있었다. 실내에 들어가니, 호랑이 탈과 우리나라 탈, '산토끼', '송아지', '개구리' 등의 한글로 된 우리나라 노래와 강강수월래하는 모습이 그려진 판화, 그림이 전 벽과 게시판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선생님 설명으로 올해 교육주제가 '한국문화'에 대해서라는 사실을 알고는 놀라왔다. 일본에서 한국문화에 대해 배운다니..

아이들과 선생님이 환영행사를 준비하셨다. "안녕하세요."를 크게 외치는 아이들이 정말 신기했다. 그동안 배운 노래와 '우리집에 왜 왔니', '강강수월래' 등의 놀이 한 대목을 아이들과 즐겁게 했다. 우리나라 노래와 햇님달님 동화를 들려주었더니, 물음 시간에 한국에 지금도 호랑이가 있는지,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는지에 대해 묻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은 어딜가나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 천진함에 서먹서먹했던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

환영행사가 끝나고 어린 아이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고, 3세 이상은 수영하러 자리를 떠났다. 나는 3세이상 아이들과 같이 다녔는데 아이들은 물장난이 아니라 수영을 배우고 있었다. 일본은 수영이 필수과목이라 한다. 수영을 마치고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로 상당히 길었고 아이들도 느긋하게 밥을 먹고는 자기 컵을 찾아 식당안에 있는 세면시설에서 이를 닦는다. 일본시설은 상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후 낮잠시간이다. 낮잠 자기 전에 그림책을 선생님과 같이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이들이 낮잠에 들자, 선생님들은 교사실에 가서 아이들 일지를 쓴다. 아이들은 80명이고, 선생님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까지 포함해서 15명이었다. 선생님들에게서 느낀 점은 정말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 간단한 간식을 먹고 노래를 하면서 지내자 엄마들이 데리러 오셨다. 일과는 4시에 끝나나, 엄마들의 요구에 의해 5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남은 아이들도 있었다.

일과후 마련된 교사들과의 간담회 내가 지니고 있던 여러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일본 교사들의 질문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 한국인을 느낄 수 있었다. '김일성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일성 사후 한국 상황이 안좋다는데 어때냐?', '북핵 문제로 재일동포 여학생 탄압사건에 대해 미안하다' 등의 물음들이 연속되면서 나 스스로 통일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들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 오키나와와 한국문화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사회가 갖는 문제, 일본내의 차별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인권 탄압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며, 보육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차별하는 아이가 아닌 차별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려 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의 있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놀이속에서 배운다는 것과, 지적인 것 보다는 감성, 신체의 발달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조금 일본의 보육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다. 메그미보육소는 한국 문화에 대해 왜곡되게 가르치지 않기 위해 이번 여름에 전 보육시설 종사자(조리사까지)가 한국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간담회를 마치며 융숭한 대접과 진지한 토론을 뒤로 하고 우리 연수단은 숙소로 돌아왔다. 다른 선생님들은 저녁을 마치고 일본 오오사카 축제인 '천신제' 구경을 가셨다. 곧 돌아와 평가시간에 각자 다녀온 시설에 대한 내용을 교류하였다. 평가후 재일동포이면서 성화보육소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민항숙언니가 과일과 김치 쌀을 사 가지고 오셨다. 일본에서 우리 동포의 위치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동포, 조국, 통일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심하지는 않았나 반성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와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7월 26일 화요일, 오늘은 어린이정보연구센터(전 유유아발달연구소) 스즈키 쇼조선생님과 좌담회와 연수단 환영 교류회가 있는 날이다.

아침을 먹고 일정에는 없었지만 무인가 이도바타보육소를 방문했다. 어제 본 보육소와는 전혀 다른 열악한 시설이었다. 보육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불법체류자, 조치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아이, 보육소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소외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스즈키 쇼조선생님과 좌담회 장소로 가면서 일본 우동집에서 우동을 먹었다. 먹으면서 왜 단무지가 나오지 않을까 의문이었다. 통역자인 최영신선생(전 지탁연 연구부원이었는데 유학중이다)에게 물었더니, "여기서는 단무지 안줘요." 한다.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왜 김밥에 단무지가 들어있을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며 크게 웃었다. 다른 나라의 음식도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 자기 문화에 맞게 바뀌는 법이겠지!

스즈키 쇼조선생님과 좌담회 장소는 어린이정보연구센터가 있는 건물 회의실이다. 어린이정보연구센터를 둘러보고 회의실에 들어갔다.

참가는 본회 교사, 이태호선생님, 김덕환선생님, 어린이정보연구센터 연구원선생님, 대관시 자치노 중앙위원 등 22명이었다.

간단하게 자기 인사들을 하고 좌담회는 시작되었다. 첫번째 주제는 일본 보육소의 문제와 과제, 두번째 주제는 동화보육의 현상과 과제였다.

일본의 0세~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의 경우 보육소, 유치원, 기타 아동으로 구분되는데 보육소는 후생성 관할로 공, 사립으로 나뉘며, 신고된 보육소는 국가가 재정 지원하고, 신고되지 않은 무인가 보육소 또한 재정요구도가 클 경우에는 지원한다고 한다.

현재 일본은 1993년 통계상 인가 22,585개소중 공립 13,276개소, 민간보육소가 9,309개소이고 그외 무인가가 7364개소이다. 일본보육운동의 과제라 하면 현재의 조치제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을 보장하는 것과 다양한 보육요구에 대응하는 것(연장보육, 야간보육, 일시보육, 장애보육) 등이며, 조치비를 없애려는 저의는 저지되었으나 정부의 수혜자부담원칙으로의 반동회귀를 막는 것이 일본보육운동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 일본보육 내부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이야기되었다. 공사립간의 차이, 유치원과 보육소간의 관점차로 인해 어린이운동으로 함께 모아내기 어렵고 현장교사들이 이런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교사의 의식전환, 연대를 위한 전략구상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두번째 강의는 일본사회에서 존재하는 피차별 부락과 연관된다. 피차별 부락(행정용어로는 동화지구)의 경우 부모들은 차별의 결과로 인해 문맹자가 많았다. 따라서 취직이 안 되고 잡업(행상, 재생산물 회수업)을 해서 생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증명을 받을 수 없어 아이를 보육소에 보낼 수 없었다. 그것을 '보육에 부족한 아이'로 간주해서 모든 피차별 부락에 보육소를 만들어, 피차별 부락 출신 아이들을 모두 조치시키도록 한 운동이 '동화' 보육운동이다. 이런 동화보육운동은 보육으로부터 출발하는 차별 철폐운동이며, '대관시' 내에 80개의 동화보육소가 있다고 한다. 이런 동화보육운동은 전체 보육운동에 영향을 주었는데 보육운동에 '인권' 중심사상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동화보육의 교육은 생활보육이라 표현하는데, 이는 자연성장론과 능력주의를 극복하

여 집단주의 보육(공동체), 놀이와 표현의 중시, 생활과 노동의 결합을 주 내용으로 한다.

스즈키 쇼조선생님과 좌담회를 하면서 우리 교사들은 깊은 감동과, 우리 역시 지난 10년과 이렇게 교육하려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자신감을 갖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요구와 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연수단 환영교류회 장소로 옮겼다.

우리 연수를 위해 함께 준비한 보육소, 자치노, 연구센터관계자분들 등 100여명이 모여 서로의 소개와 어흥으로 진행된 교류회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일하지만 같은 일을 한다는 공감대로 인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벅찬 감동을 주었다.

7월 27일 수요일, 오늘은 보육소 실습 둘째날로 각 조에 따라 보육소로 떠났다. 회장님은 베이비 호텔, 직장보육소 견학차 떠났고, 나는 안경숙선생님과 애신보육소로 향했다. 숙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애신보육소에 도착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나는 5세반에 들어갔다. 20명의 아이들과 교포 장지혜자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느 보육소나 마찬가지로 좋은 시설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허름한 시설이기는 하나, 아이들의 움직임과 요구에 맞게 정비되어있었다.



일본의 타시설에 비해 좁은 편이나 최대한 활용한 바깥공간. 이곳의 아이들은 미끄럼틀 타고 수영장으로 내려간다. 수영후에는 미끄럼틀 옆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간다. 고무무릎에서는 감기걸린 아이들이 놀도록 한다.



오늘은 선생님이 한국어를 잘해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거기다가 서울에서 온지 1년에 채 안된 성택이가 따라다니며 통역을 하는 바람에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애신 아이들은 90%가 재일 교포 2,3세이다. 한국 기독교부설 민간 보육소로, '민족교육을 통해 아동, 부모, 교사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라는 과제 아래 보육생활과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인 한글사용과 환경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날의 하루일과는 오전에 한글로 자기 이름쓰기와 자기소개였고, 그후에는 수영하러 나갔다. 여름에 수

영이 최고라는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수영장 안에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수영 이후 5세반 교실이 2층이기 때문에 1층 식당에서 식기 에레베이터로 올라온 점심을 먹고 낮잠에 들었다. 아이들은 낮잠시간이 끝난 후 일본과자를 간식으로 먹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고 더 있는 아이들은 1층으로 내려갔다.

애신보육원은 한국인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메그미 보육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연수회를 마치고 성화법인 이사회 초청 저녁식사를 하였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대에 고마움을 느꼈다. 숙소로 돌아와 평가회 시간을 갖고 각자 다녀온 보육시설의 현황을 교류하고 여러 토론을 한 후 늦게야 잠이 들었다.

7월 28일 목요일, 오늘은 조금 피곤하다. 일정은 동화보육연구협의회(이하 '동보연') 주최 주길동화보육소 견학과 동화보육운동에 관한 간담회가 있다.

워낙 지하철이 발달한 나란지라 여러 번을 갈아타고 '주길'이라는 피차별부락을 갔다. 70년이후 주거개선을 정취해서 외면상으로는 피차별부락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지만 곳곳에 붙인 벽보에 피차별해방 등의 문구를 보면서 타지역과 다름이 느껴졌다.

지하철에서 5분정도 걸어 유아보육소에 도착했다. 이전에 견학했던 민간보육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바깥공간, 수영장, 실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건물의 중앙은 어디서든지, 어느 교실에서든지 올 수 있게 계단과 비탈길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이 넓은 홀과 같았다. 연령에 따라 나뉜 교실, 음악실, 수영장, 비가 와도 바깥놀이를 할수 있게 만들어진 바깥공간, 넓은 잔디와 운동장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한다. 영아보육시설 역시 유아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이지만 천정에 햇빛이 들어오는 채광장치가 되어있어 어디든 밝은 채광이 유지되었으며, 일본의 다른 시설과 달리 온돌방으로



↑ 일본은 자전거 문화가 발달하여, 앉기 편하게 보조의자가 설치된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엄마들을 종종 보게 된다.

↓ 주길동화보육소내 영아시설. 걸음연습을 할 수 있는 벽면의 손잡이가 기발하다.



되어 있다.

보육소 견학후 15미터 정도의 석상(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함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방회관'에 들어가서 부락운동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화보육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 자리를 옮겨 동화보육연구협의회 주최로 동화보육운동에 관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오오사카 동화보육연구협의회는 1969년 3월 결성되었으며, 보육소건설운동이 성과를 보이자 보육내용에 대한 내용운동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러한 동화보육의 내용을 동화보육소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확대하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활동의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내용에 있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서로의 교육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교육내용이 아직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올바른 것이라 확신하며, 이후 일본의 정리한 내용을 교류할 필요성을 느꼈다.

내일은 보육행정연수외에는 별 다른 일정이 없다. 오늘로서 일본의 교육적 측면의 보육을 다 본 것이다. 우리 또한 이렇게 몇십년은 보육현장에서 실천하고, 그런 우리 활동의 성과로 좋은 보육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짐하며 숙소로 향했다.

7월 29일 금요일, 보육행정연수는 오오사카 시청 회의실에서 있었다. 민생국 과장의 설명으로 본 오오사카 보육현황은 우리가 연수과정동안 간헐적으로 들었던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일본은 보육행정자가 자치노(조)라는 조직의 노조원이다. 그래서 보육공무원은 일정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구성하며, 자치노를 통해 보육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상황에 비추어 동사무소, 시청에서 본 보육행정 담당자와 비교하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국공립보육소의 교사가 공무원인 것을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오오사카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의 도시인데 보육행정 담당공무원이 64명이란다. 우리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2명인 사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보육행정연수가 끝나고 일정중에 단 한번의 관광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오오사카가 자랑하는 수족관, 해유관을 갔다. 관광의 명소답게 대단한 수족관이었다.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중얼거린다.



관광후 일본연수 마지막 일정인 성화보육소 선생님들과의 환송회가 있었다.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싹텄던 정들을 나누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기쁘게 시작했지만 언제나 이별을 아쉬워듯이 자못 서운한 기운이 돈다. 그러다 일본 선생님들중 재일교포 선생님들의 소감에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가진 동포애와 그들이 겪는 아픔때문에 서로 울면서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연수 마지막이라 다른 선생님들은 일본선생님과 환송회 이후에도 숙소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지만, 나와 회장님은 내일 참가할 보육대회를 위해 역지로 잠자리에 들었다.

7월 30일 토요일, 잠자는 선생님들을 뒤로 하고 새벽에 보육대회가 열리는 '군마'로 향했다. 보육대회는 자치노와 어린이정보연구센터 주최로 전국의 보육자(보육교사)들이 모여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을 준비하는 자리이다.

기차역까지 마중 나온 김덕환 선생님이 우리를 배웅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우리쪽을 쳐다보시는 것이 보인다. 선생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에 가서 더욱 열심히 일하리라 다짐하며 기차에 올랐다. 통역에 애신보육원 교사이며 재일동포인 장지혜 자 선생님이 동행하시고 희망의 문, 성화보육소 선생님도 같이 갔다.



2시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맡기고, 대회 장소로 향했다. '군마'는 오오사카와는 또 다른 분위기이다. 거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분위기가 엇보였다.

대회 장소에 도착하니 몇천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잡고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회장 정면에는 해바라기 그림을 바탕으로 '어린이는 주체자, 21세기의 보육을 만들자'라는 대회 슬로건이 보였고 그 밑으로 보육대회의 요구가 적혀있었다.

주제강연은 현 일본제도에 관한 것과, 후생성에서 나온 보육개혁안에 대한 검토이다. 후생성 보육문제 검토회에서 의 개혁제도안은 '이때까지의 조치제도는 시대에 안맞게 되었으므로 제도 완화의 하나로서 행정의 관여를 줄이고 부모가 원하는 보육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보육료는 평준화되니까 부담이 큰 계층에게는 부담감이 준다. 보육소 서로가 경쟁하는 것으로 다양한 부모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결국은 국가 지출 복지예산줄이겠다는 의도인데 이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주제 강연의 내용의 골자였다. 개혁의 찬성안과 반대안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과제로 남기며 강연을 마쳤다. 자치노의 안은 조치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실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 한다.

강연 이후 분과로 나뉘어 교류회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아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사를 표명할 권리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다. 교류방식의 신선함(단순한 소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교류하는)과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교류회를 흥미진진하게 했다. 교류회는, 아직까지 어린이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교사는 적극적으로 어린이가 의사표명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7월 31일 일요일, 오늘은 하루종일 분과별로 주제 토론을 하는 날이다.

우리는 제2분과회 '보육개혁과 보육일원화'에 대해 스즈키 쇼조 선생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했다. 보육개혁을 어린이를 주제로 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그 이후의 토론에서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이해에 기반한 보육교사들의 문제제기가 많아 논의의 어려움이 있었다. 현장이 깨어나야 한다는 이전의 다른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무얼 뜻하는지 이해가 갔다. 현장이 살아 숨쉬고 끊임없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은 부수적인 획득물이었다.

이제 전체 연수가 끝났다. 일본선생님들과 마지막 환영회와 호텔 로비에서 가진 이야기시간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8월 1일 월요일, 이제 서울, 아니 지택연 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으로 떠난다. 신간선(고속철도)을 타고 동경에 와서 다시 오오사카로 가서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동안 같이 지냈던 장지혜자 선생님이 평평 운다. 서로 장은 다르지만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아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도 10년, 아니 평생을 보육 현장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보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창을 통해 보이는 구름을 보다보니, 어느새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에 도착하면서 내 조국에 왔다는, 내 일터에 왔다는 생각 때문에 피곤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다.

■ 특집 2

독 일 탐 방 기 (4)

최종국 / 전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

(7월호에 이어)

그곳에서 멀지 않은 윤혜자씨 집에서 일단 허기를 면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너무 늦어 염치불구하고 그 덕에서 묵었다. 학교기숙사였는데 부부를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 입식으로 된 주택으로 방 2개와 부엌, 거실과 욕실 딸려 있었다. 집도 편하고 사람도 편해서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이나 유학생들이 자주 그 집을 이용한다고 했다. 그 집에서 한국식으로 거나하게 먹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그분의 도움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방문한 어린이집은 조금 특수한 형태였다. 60-70년대 교육대개혁 시기에 형성된 아동상점¹⁾의 한 형태였다. 부모들이 모여서 시에 요청을 해서 건물과 땅을 무료로 임대받고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있었으나 아동교육에 있어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에 요청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교사 2명을 두고 있었다. 이곳에는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빈민지역의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운영은 전적으로 부모들이 책임지고 교육은 시에서 위탁한 교사들이 책임지고 있었다. 재정의 일부도 시에서 보조해주므로 운영은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큰 홀과 작업실 그리고 화장실과 조그마한 부엌이 있었다. 이곳 베를린의 유행인지 몰라 그 이 자그마한 어린이집의 교실에도 먼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2층과 같은 다락방이 있었고 아이들도 그곳에서 놀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가끔 부모들이 자원봉사를 와서 간식을 만들기도 하고 부모들의 직업에 관해 보여주기도 한다고 한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얀 눈발이 날린다. 그속에서 아이들도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 다니고 있었다.

1 부모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탁아시설의 기원을 아동상점(kinderladen이라 일컫는데, 감자나 야채를 팔던 상점이라든지 창고를 빌려서 탁아활동을 전개한 사실에서 기인한다)운동으로 표현되는 60년대말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반권위주의적 교육을 표방하면서 전개된 학생운동의 진행과정에서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대회(1968년 2월)를 소집했을 때, 자녀를 둔 학생부모들이 자발적 내지 자생적으로 대회장소 일각에서 추진한 탁아작업이 모태가 된 것이다. (지택연 정책연구부 편, 탁아정책연구, 1992.7)

이제 이 글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다.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신있게 교육공간을 개방하는 곳은 별로 없었다. 어느 정도 자신의 교육관에 자신이 있는 교사는 예외였지만...

그후에도 몇개의 어린이집을 더 방문해 보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였으므로 전부 다 소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사의 질이었는데 한국의 어린이집 특히 지탁연 소속의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은 독일교사들에 비해 훨씬 낫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선진적인 교사의 헌신과 노력은 개인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베를린 자유대 교육학과에 다니는 분이 실습 나가야 된다면 설문지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15년간 교사들이 관찰해온 아동의 연령별에 따른 수, 과학, 인지, 언어, 사회성 등에 대한 특성을 관찰해온 내용이 예를 들어 세밀하게 담겨져 있었다. 이러한 축적된 내용이 결국은 선진교육을 이끌어 내는 밑바탕이 아닌가 싶다.

어린이집의 양적인 증가가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나는 내용의 축적없이 교육의 질은 변화될 수 없다고 본다.

지탁연에는 많은 정말 헌신적이고 유능한 교사들이 많이 거쳐갔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애정은 개인의 헌신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보아왔다. 또 다시 새로운 능력있는 후배교사들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교사들의 경험을 좀더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무엇으로 자라는가? 아이들은 교사들이 주는 꿈을 먹으며 산다고 생각된다. 사랑도, 절망도, 용기도, 희망도.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다. 지금 이시간에도 비지땀을 흘리며 아이들과 씨름할 교사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꿈을 나눠주고 있는 교사들의 건강을 빌며 어느 책의 서문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우리는 이땅의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 아래서도 인간으로서 아이답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어른들은 이러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이번 호호 독일탐방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귀한 경험을 회원들에게 소개하시느라 수고하신 천홍국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 작은 기적 이어가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네 전래놀이 (II)

- 두 번째 이야기, 명절 날 더불어 둘러 앉았네 -

정리 변미양 / 본 회 재정간사, 편집부

누가 그랬는가, 떠나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 모습은 아름답다고.

여름의 무더위가 끝도 없을 것 같더니 약속된 절기들이 되자 성큼성큼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가 새삼 대자연의 법칙을 실감하게 되는 즈음, 머지않아 일년의 결실을 추스릴 우리의 명절 '팔월 한가위'가 다가온다. 그저 명절이란 때가 되면 쟁기고, 시달려야 되는 통과 의례인양 느껴지기도 하는 이 즈음의 풍속도, 하지만 고단하고 짜증스러운 교통란의 귀향전쟁을 치러내면서도 기어이 낱알으로 흩어진 삶의 형제, 자매들이 부모와 고향의 품 속으로 모여드는 것이 우리네 명절이 갖는 귀소 본능이요, 아늑함이다.

이 날에 어른들은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며, 함께 노닐던 어릴적 기억으로 서로의 고감이 풍부해지는 자리가 꾸며지지만, 아이들에게는 혈육으로 맺어진 친척이라지만 조금은 낯선 사촌·육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어색하고 재미없는 자리일 수도 있다. 이럴때 어른들의 기억속에 꼭꼭 묻혀 있던 아이적 놀이들을 꺼내어 어린 애들에게 가르쳐 주며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살아있는 전래 놀이 마당이 될 수 있으리라. 자칫 홀로 노는데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은 비로소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어울림이라든가, 옛 것이라든가, 전통을 배우게 될 것이고 명절의 정겨운 의미를 새기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이 때쯤은 서로가 해 보았던 놀이들을 더듬어 보고, 꺼내 맛장구쳐 보려 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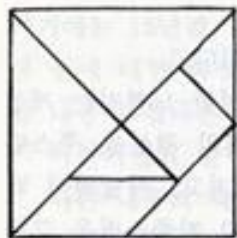
이번 차례에는 특히나 명절이란 때의 모임 자리를 고려하여 가족끼리 더불어 즐겨보던 놀이며, 또래며 위 아래 아이들끼리 흥겹고 쉽게 영거붙으며 어울리던 놀이들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 - 칠교(七巧)놀이

◆ 놀이 개요:

일곱개의 조각판으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면서 노는 놀이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옛날에 집에 손님이 찾아 오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혹은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에 주로 했다. 그래서 칠교판(七巧板)을 유객판(留客板: 손님을 머무르게 하는 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 놀이 방법:



칠교판은 사방 10cm쯤 되는 얇은 나무판을 다음 <그림>과 같이 쪼개서 만든다. 집에서 손쉽게 만드려면 두꺼운 도화지나 골판지로 만든다.

칠교놀이는 혼자 하기도 하고 2명 또는 여러 명이 하기도 하는데, 일곱 개의 조각을 모두 이용하여 인물, 동물, 식물, 기물, 건축물, 지형, 글자형 등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조를 짜서 겨룰 때에는 쉬은 또는 백을 세는 동안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약속한 시간 안에 만들면 한 점을 얻고 만들지 못하면 점수를 얻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기회를 넘겨 주어야 한다.

◆ 진행 요령과 유의점:

형, 아우 등이 섞여 한 편을 이루고 서로의 피를 내어 모양을 만들어 견주어 볼 수 있고, 어린 아우가 놀이를 진행하는 법을 잘 모를 경우 사물과 이름 등을 짝맞추어 알려주는 교육적인 면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 놀이 모양의 예:

만들기 쉬운 모양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물: ①걸어가는 사람 ②누워서 책 읽는 사람 ③달리는 사람

동물: ①개 ②술개 ③물새

식물: ①복숭아 ②연꽃 ③연꽃술

기물: ①의자 ②동불 ③배

건축물: ①돌다리 ②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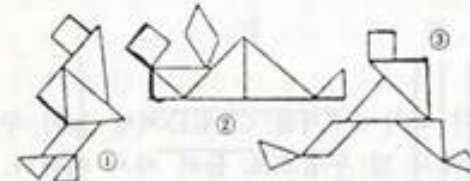
지형: ①삼각산 ②오봉산

글자형: ①小 ②大 ③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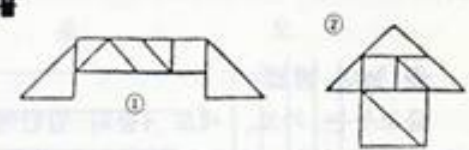
기타형: ①삼각형 ②평행사변형 ③직사각형

이밖에도 각자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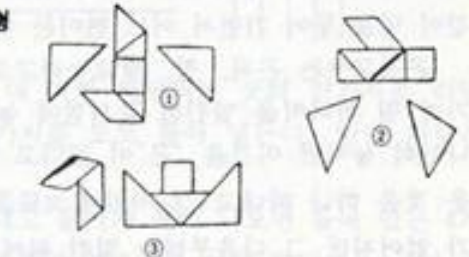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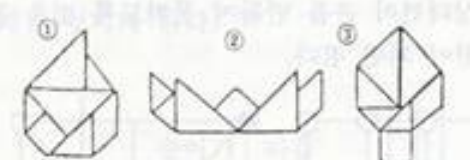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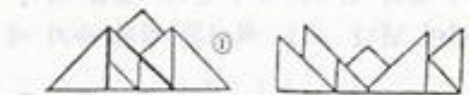
글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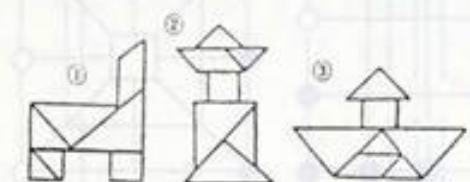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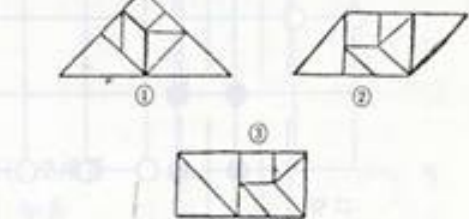
지형



기물



기타형



둘 - 고누놀이

◆ 놀이 개요:

고누놀이는 고대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 때 생긴 장기 놀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혜를 겨루는 놀이이다. 놀이방법이 단순하면서도 흥미있어 길바닥이나 논두렁, 나무 그늘 밑, 마당 한 구석 평평한 곳에서 예로부터 즐겨 온 민중 놀이이다.

종이에 고누판을 그려 놓고 흰 말, 검은 말로 놀기도 하지만 땅바닥에 고누판을 그려 놓고 성냥개비나 조각들을 주워 놀 수도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별다른 준비 없이 짬짬이 즐길 수 있는 놀이이다.

◆ 놀이의 어원과 종류:

고누라는 말의 어원은 확실히 알 길이 없으나, 각 지방에 따라 '고누', '고니', '곤', '편'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땅바닥에서 두는 까닭에 지기(地碁)라고도 한다.

고누에는 우물고누, 줄고누, 곤질고누, 패랭이고누, 호박고누, 자동자고누 등이 있

다.

◆ 놀이 방법:

줄고누는 가로, 세로 4줄의 말판에 양편이 각각 4-6개를 <그림1>처럼 놓아 두고 한 칸씩 두어간다. 상대방의 말 한 점을 직선상에서 말 두점으로 둘러 싸서 따낸다. 이와 같이 말을 두어 가면서 어느 편이든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잡아 내는 편이 이긴다.

곤질고누는 곤지, 참, 찢고누라고도 한다. <그림2>와 같이 판 위에다 양편이 번갈아가며 말 하나씩을 말판의 교차점에 놓아 나간다. 이렇게 해서 말 세 개가 일직선 위에 나란히 놓이면 이것을 '곤'이 됐다고 하고, 곤이 되면 상대방의 말 중 상대방에게 이로운 것을 하나 따내고 그 자리에 x표를 그어서 말을 놓지 못하게 한다. 말을 놓을 자리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판 위에 놓인 말들을 한 칸씩 움직여 곤을 만들면 상대방의 말을 한 개 떼어 낸다. 말을 떼어 낼 때 상대방이 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말을 골라서 떼어 낸다. 어느 쪽이든 말의 수가 세 개 미만이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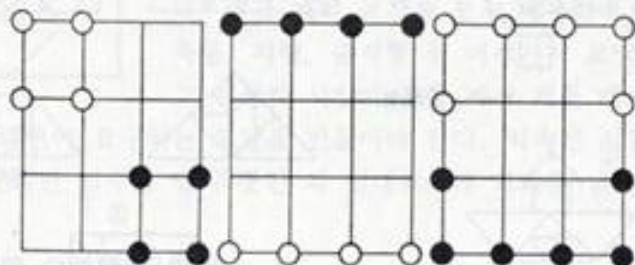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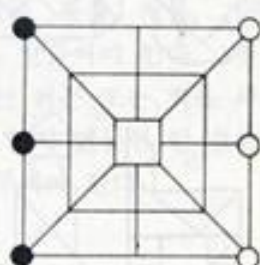


그림 2

◆ 유의점:

고누 놀이는 처음에 아이들에게 방법을 이해시키느라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아주 간단한 법칙 몇 가지만 알게 하여 반복 시키면 5세 이상의 아이들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 보여지며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방법을 응용하는 지혜와 침착한 자세를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다.

넷 - 산가지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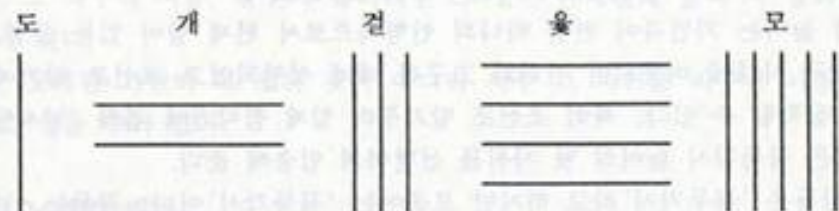
◆ 놀이 개요:

산가지는 계산하는 데 쓰는, 짧게 깎아 만든 가는 막대기를 말한다. 옛날에는 참대, 수수대, 싸리가지 등을 매끈하게 깎아서 만들었으나 요즘은 비닐관으로 된 산가지를 흔히 사용한다. 또는 성냥개비를 이용해서 놀기도 한다.

◆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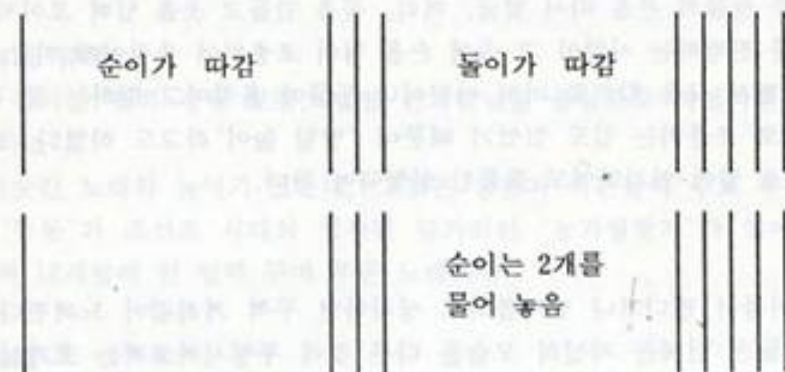
산가지 따기

<그림>



산가지를 <그림>과 같이 늘어놓고 윗이 나는 데 따라 해당되는 곳의 산가지를 따낸다. 해당되는 곳에 산가지가 없으면 따 놓은 산가지를 도로 물어 넣는다. 만일 따놓은 산가지도 없으면 그만큼 빗을 지게 된다.

만약 순이가 개가 나오면 개에 있는 2개를 따내고 둘이가 윗이 나오면 윗에 있는 4개를 따 낸다. 다음에 순이가 윗이 나오면 윗에 산가지가 없으므로 아까 따 2개를 물어 넣고 2개는 빗지게 된다.



빚진 것은 산가지를 따내는 즉시 갚아야 하며 계속 따내지 못하면 계속 빚만 늘어 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일정한 횟수를 거친 후 산가지를 많이 딴 편이 이긴다.

◆ 유의점:

놀이의 기본 방법만 익히면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어린 아이들에게 차분히 설명하여 자기들끼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 놀이에 사용되는 용어로 흥을 돋우고 셈의 기초 등을 익힐 수 있을 놀이다.

넷 - 꼭두각시 놀이

◆ 유래 및 어원:

탈춤, 탈놀이는 가면극으로서 주로 어른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놀이로 꼭두각시 놀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지역적 특색을 가진, 그리고 역사가 오랜 가면극에는 '양주 별산대 놀이', '봉산 탈춤', '오광대 놀이', '하회 가면

극' 등이 있고, 그 안에 지방고유의 가면극이 25-30개 있다.

꼭두각시 놀이는 가면극이 변한 하나의 인형극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문헌과 기록으로 보아, 삼국 시대에 비롯되어 신라와 고구려 대에 성행되었고 조선조 말기에 가장 발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조 말기부터 일제 침략기에 걸쳐 '남사당 패거리'들의 활동상은 꼭두각시 놀이의 뒷 자취를 선명하게 입증해 준다.

보통 사람들은 '꼭두각시'라고 하지만 표준어는 '꼭두각시'이다. 꼭두는 인형을 말한 다. 꼭두각시는 원래 '괴뢰', '덜미'라고 불렀는데, '덜미'란 목덜미를 말하고, 목덜미를 잡고 노니까 '덜미 놀이', '덜미 맞추기'라 하였고, 놀이를 진행하는 사람의 뜻과 말,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괴뢰처럼 동작한다 하여 꼭두각시라 이름하여 '꼭두각시 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 놀이 방법:

꼭두각시는 인형 옷을 입혀 꼭두각시 노릇을 하니까 인형극이 된다. 사람 이외에 육지 동물이나 수중 동물의 본을 따서 얼굴, 머리, 몸을 만들고 옷을 입혀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놀이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 속에 손을 넣어 조종하여 움직이게 하고, 그 동작에 맞는 말을 하면서 극을 함으로 마치 어린이나 동물이 움직이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인다. 옛날에는 발로 조종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발탈 놀이'라고도 하였다. 또 아이들이 탈을 쓰고 옷을 입어 연기하여도 훌륭한 인형극이 된다.

◆ 유의점:

미리부터 준비물이 많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무척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일상에서도 아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다른 것에 투영시켜보려는 호기심이 있고, 다른 물체를 통해 그것을 느껴보거나 대리적인 심리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럴 때 형깍이라든가 작은 모형을 통해 인형을 만들어 주고 손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면 그리 까다로운 놀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여러 어른들과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몇 가지 주변 물품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본 이름 그대로 꼭두각시 놀이를 엮어 보도록 이끌어 준다면 교육적 효과도 무척이나 크겠다.

다섯 - 달따기

◆ 놀이 개요:

달따기 놀이는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놀이는 아니다. 지방에 따라 달따기 놀이를 하는 곳도 있고, 달따기 놀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노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곳도 있다.

달따기는 어린이들의 놀이로서 대개 밝은 달밤에 달이 나무에 걸렸거나, 지붕위에 걸렸거나, 산 위에 걸렸을 때, 그 달이 자기들의 눈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 달을 따라가서 따자는 놀이이다.

나무와 지붕과 동산에 걸쳐 있는 휘영청 밝은 달은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있으

나, 실제로 그 나무나 지붕, 동산에 올라가면 그 달은 온데간데 없이 저 멀리 허공에 떠 있음을 보게 된다.

달은 한 곳에만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자리를 바꾸어 이동하니까, 따기가 어렵고 잡을 수가 없다.

◆ 놀이 노래와 방법:

아이들이 달이 떠 있는 나무 밑, 지붕 아래, 동산 밑에 모여서 두둥실 떠 있는 달을 구경하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 이태백이 놀던 달아 /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
계수나무 박혔으니 / 금도끼로 찍어내어 / 옥도끼로 다듬어서 /
양천 부모 모셔다가 / 천 년 만 년 살고지고 '

라며 노래를 부르며 둥그렇게 돌면서 놀았다.

이때에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든가, 손을 맞잡고 빙빙 뛰어 돌며 노래를 불렀다.

◆ 놀이의 유래:

달따기 놀이는 음력 정월 보름, 팔월 한가윗날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보름날 2-3일 전후에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노래와 놀이가 있는데, 그것은 농촌의 어른들이 주로 부른 노래로서, 고려가요의 '동동'과 조선조 시대의 창작된 달거리인 '농가월령가'가 있어 정월에서부터 12월에 걸쳐 12개월에 한 달씩 꾸며 부른 노래이다.

◆ 유의점:

밤에 하는 놀이이므로 주변 상황에 주의하도록 하며, 가능한한 넓게 트인 곳에서 달을 마주 바라 보며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면 더욱 좋지 않을까.

■ 긴급진단(1)

어린이 수입 영상물 심의, 이대로는 안된다

- 문제부 <무적파워레인저>의 '비디오 복제 불허가'와 <슬램덩크>의 '비디오 복제 허가'로 야기된 어린이 폭력 영상물 심의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

얼마전 방영을 마친 만화영화 <무적파워레인저>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항의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펴고 있다. 서울 YMCA를 필두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살기좋은 구로지역 여성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참고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울지부, 한국어린이보호회, 한국여성민주회와 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이 움직임에 함께 하고 있다.

이 글은 9월 2일 위의 단체들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이 글에 이어 '텔레비전 어린이 수입 영상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 방송사, 비디오업계, 정부 부처간, 매체별 심의기구 사이의 상업적 이해관계와 책임회피를 위한 공방전 속에 우리 어린이들이 폭력영상물에 멍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영방송인 KBS-2TV를 통해 방영되었던 <무적파워레인저>는 폭력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어 방영 당시 서울 YMCA 등 시청자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는 어린이 실사합성영화이다. (지난 8월 25일 AFP통신에 의하면 뉴질랜드 방송위원회에서도 어린이들에게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방송불가함) 이같은 어린이 폭력영상물이 어떻게 공보처의 수입 추천과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영방송인 KBS에서 방송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우선 방송사와 공보처, 방송위원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무적파워레인저>의 비디오 판권을 KBS로부터 넘겨받은 계몽 아트는 공영윤리위원회의 수입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에 '비디오복제 허가' 신청을 냈으나, 문체부는 KBS 방영 당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폭력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계몽 아트는 <무적파워레인저>가 이미 공중파 방송으로 방영되었던 어린이 영상물이라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문체부가 복제 허가를 내준 스포츠 만화비디오 <슬램덩크>의 폭력성을 문제삼아 <무적파워레인저> 비디오복제 불허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우리는 오늘 이같은 일련의 사태가 단지 행정부처 허가행위의 형평성 여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방송사, 비디오업계, 정부 부처간, 매체별 심의기구 사이의 상업적 이해관계와 책임 회피 속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제 더이상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무책임과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폭력적인 영상물에 희생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한 우리 시민단체는 이번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폭력영상물에 대한 공동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어린이 영상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최근 어린이 영상물에까지 상업적 논리가 횡행하고 있으며, 상업방송 SBS 개국 이후 텔레비전과 비디오에서의 수입영상물의 폭력, 선정, 왜색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텔레비전, 비디오 어린이 수입 영상물들은 방송위원회와 공영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의 사전심의를 거쳐 방영되고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선정, 왜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텔레비전의 경우 상업방송인 SBS의 개국 이후 눈에 띄게 폭력, 선정성이 강화되고 있음은 시청자단체의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서도 여러번 지적된 바 있다. 방송사간의 지나친 시청률경쟁이 어린이 프로그램에까지 확대되어 질적으로 저하된 폭력성향의 만화영화 심의신청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방송불가와 조건부 방영의 사례도 지난 해에 비해 월등히 늘어나고 있다. (방송위원회 94년 상반기 만화심의 보고서)

이는 방송사와 비디오 업계 모두 어린이 영상물이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기 보다는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인식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국제화, 개방화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폭력적인 수입영상물의 심각성이 간과된 채, '자율화'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작사의 상업성 강화를 위한 것인양 건강부회되고 있다.

계몽 아트가 그동안 어린이 문화창달을 표방해왔던 기업으로서 굳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 수입 영상물을 출시하고자 하는 행태는 단지 상업적인 목적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계몽 아트가 종합유선방송 만화채널을 신청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텔레비전과 비디오 등 매체별 심의기구와 심의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일관성 없는 심의기준이 어린이 영상물의 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적파워레인저>에 대한 문화체육부의 '비디오 복제 불허가 처분'은 어린이 수입 영상물 심의 기구 사이에 어린이 영상물에 대한 질적 심의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결과이다.

공중파 방송의 수입 영상물은 공보처의 수입 추천과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되고 있으며, 비디오는 공영윤리위원회의 수입 심의와 문제부의 비디오 복제 허가, 다시 공윤위 본심의 를 거쳐 비디오로 출시하게 된다. <무적파워레인저>의 경우 공윤위 수입 심의는 마쳤으나 문제부 심의과정에서 비디오복제 불허가 된 것이다.

공영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심의는, 시리즈물의 경우 전작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부분적인 심의가 이루어져 작품 전체의 질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시리즈물의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그 폭력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전반부에 비교적 완화된 내용이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점차로 조금씩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 심의를 갑자기 강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심의기준에 일관성이 없음이 방송사와 비디오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업계의 불만은 다시 심의 완화로, 시민단체의 항의와 여론이 다시 확대되면 심의 강화로 일관성

없는 심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어린이 영상물이 성인물과 함께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성인외화와 어린이 만화영화의 많은 양이 한꺼번에 심의되기 때문에 어린이용은 주변으로 밀려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더구나 성인영화를 심의한 기준으로 어린이 만화들을 심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성인용 폭력 영화 심의 후 어린이 만화의 폭력성은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현재 각 심의기구의 심의위원들은 어린이 자녀가 없는 50대 이상의 연령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어린이들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하는 심의에 장애가 될 수 있다.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파 방송의 어린이 수입영상을 심의의 엄격성이 요구되며, 동시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다는 사실이나 다른 작품과의 상대적 비교평가가 어린이 영상을 폭력성 기준의 잣대가 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텔레비전 어린이 만화영화 역시 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거의 90% 가까이를 일본,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TV 방영물이 비디오로, 비디오물이 TV에서 방영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TV 방영물이라 해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시청해도 좋을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최근 들어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은 어린이 영상물의 폭력성을 부추기고 있다. 닥터 제 '다채널 시대 공중파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우리 방송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에서의 어린이 수입영상물의 신중한 선택과 심의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무적파워레인저>는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BS에서 방송되었던 것이긴 하나 방영 초기부터 전체 이야기 구도가 악의 폭력을 선의 폭력으로 대항하여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폭력적 장면을 즐기 위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정의라는 명분을 이용하고 있음이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누차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KBS에서는 기수입된 40편 외에 이후 50편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보처에 밝혔고, 공보처는 향후 어린이 영상물 추천시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시청자단체에 전한 바 있다.

이처럼 분명한 문제를 지닌 어린이 영상물이 단지 공중파로 방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디오 복제 허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같은 시기에 허가된 작품의 폭력성을 들어 비디오복제 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물론 우리도 심각한 폭력적 내용의 <슬럼캣> 비디오를 같은 시기에 문제부가 허가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적파워레인저>의 폭력성은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한다. 어디에선가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야 한다.

4. 이번 사례를 통해 어린이 영상물에 대한 상업적 지배를 차단할 사회적, 행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단체 등이 어린이 문화와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가 이를 수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적파워레인저>의 폭력적 주제와 장면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견을 문제부가 받아들여 복제허가업무에 반영한 것은 시민사회의 공공적 사회통제에 대한 바람직한 관행을 만들어 주는 사례이다.

시민단체는 성인용이 아닌 어린이 영상물에 대해서 만큼은 돈벌이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텔레비전과 비디오 등의 영상물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 모델과 가치를 습득시키며, 오락적 재미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미디어의 독립성을 주요한 가치로 하고 있는 선진 각국에서도 어린이 영상물에 대해서 만큼은 그 심의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뉴질랜드에서 <무적파워레인저>에 대한 방송불가를 내린 것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허용의 정도는 심각히 우려된다.

5. 사회적 여론화를 통한 총체적 문제제기를 통해 어린이 영상물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무적파워레인저> 사안은 단순히 비디오업계와 문제부간의 행정사의 갈등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무적파워레인저>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어린이 영상물의 현주소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어린이 영상물에 대한 심의체계와 심의기준의 난맥이 행정심판이라는 사안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적파워레인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린이 영상물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사, 방송위원회, 공보처 혹은 비디오 제작사, 공연윤리위원회, 문화체육부 등의 문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또한 심의제도와 기구의 문제뿐만 한정지어 볼 수도 없다.

어린이 영상물을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바라보는 방송사와 비디오제작사의 인식 전환, 어린이 영상물 전문 심의기구의 마련과 일관성 있는 심의기준과 체계, 보다 중요하게 어린이 영상물이 우리나라 어린이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미 어린이 영상물은 TV에서 방영되었던 것이 비디오로, 비디오물이 TV로 방영되는 일이 자주 있으며, 나아가 종합유선 방송이 시작되면 매체간의 심의의 일관성이 더욱 필요하다.

어린이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지 않은 채 닥터 제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수입 영상물의 의존도가 높아질 때,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소지가 많으며 결국 이 피해의 당사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될 것이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 문화의 보루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어린이 영상물에 대한 전면적 문제검토와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됨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 시사말썽이

공안 한파를 물고 다니는

바람잡이 총장은 이 시대의 카멜레온인가!

편집부

최악의 살인적인 더위가 휩쓸고간 8월.

무더위와 함께 우리 곁을 찾아온 주사파 열풍.

공안정국 때마다 나타나는 불길한 총장 박흥.

판단의 근거도 없이 집단 최면으로 걸려들고 있다.

한달 내내 뉴스를 만들어 간 박흥 총장의 발언은 국내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길고도 지리한 마라톤 선언이었다. 아니 폭탄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온 나라안을 주사파라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갔고, 그 결과 89년 이래 국가보안법은 최대의 호황을 맞게 되었다. 공안 한파를 물고 오는데 일등공신이 된 셈이다. 민주화 투사라며 스스로 떠벌렸던 그가 공안정국의 바람잡이가 된 그의 깊은 의중은(?) 어디에 있을까?

박흥 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변혁기를 맞아 사상적으로 방황하면서 주체사상의 독약을 먹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발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같은 말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들였으며 밀천이 떨어질세라 각계를 주사파로 몰아매기 시작했다. 이미 경각심의 수위는 넘어선지 오래다. 때를 놓칠세라 정부는 주사파 색출작업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범민족대회 참가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가 하면 무차별 수색 등 폭력의 형태는 정말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그의 말은 이젠 더이상 말이 아니다.

폭력이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박흥총장은 "궁금하면 직접 가서 보라.", "근거고 나발이고"라며 서슴없이 언어적 폭력을 자행하는 당당함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박흥 자신은 직접 가서 보았던 말인가? 이에 항의가 잇따르자 한 학생의 고해성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한 발 주춤거렸으나, 신부로서 고해성사를 누설하는 것은 성체모독죄와 함께 최고의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지라 박흥 총장은 다시 재빠르게 말 바꾸기에 나섰다. 그렇지 않으면 사제로서의 정치적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이같은 태도는 주사파 시리즈 내용에서도 수도 없

이 반복되어졌다.

그런데도 그의 근거 없는 말들이 이 사회를 공안한파로 뒤흔들고 집단 최면으로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에 있는가? 혼란으로 이끄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한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게 우리의 언론이다. 그야말로 근거고 나발이고 뉴스가 되고 사회에 충격을 주면 그만이라는 식이 공안정국을 만들어 가는 또 한쪽의 바람잡이인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그를 두고 '스승의 용기'라며 '용기 있는 지식인이 탄압 받는다', '고난 받는 양심' 운운하며 그를 부추켜 왔던 것이다. 또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라며 박흥의 발언 자체가 증거라며 상식 밖의 논리를 펴면서까지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양심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가?

이쯤해서 그가 그토록 목놓아 주장했던 배후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카멜레온 총장을.

사회 분위기를 극단적으로 보수주의로 끌어 내는 것이 검찰의 변함없는 숙업이다. 물론 트는 대로 흐른다는 신념(?)하에 말이다. 근거 없는 발언을 변호하는 그들의 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박흥의 발언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이 갈 법한 일이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유화정책에 채기를 박고 공안정국을 유도한다는 속셈을 십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조작해나가면서 신공안정국을 만들어 가자는데 그의 망발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 시계추를 잡아 당기고 있는게 박흥 총장의 실체였다.

한동안 무르익은 민족적 과제인 통일운동이 주사파 열풍으로 때이른 서리를 맞으며 실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민주화 운동 세력 전체에 대한 매도와 탄압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제국은 없다. 거짓은 순간 명위를 떨칠 수 있지만 오래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선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다. 그 난해한 숲은 그림은 찾아낸 셈이니까.

하느님그림판



■ 건강하게 삽시다

가족 건강을 위한 실내 환기 요령

김철환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도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 집과 사무실, 학교, 공공장소와 같이 실내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실내공기에는 각종 해로운 물질들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빌딩내 실내공기 속에는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탄화수소, 분진과 같은 호흡기 자극성 물질과 석면, 라돈 등의 발암성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유해물질은 호흡기질환, 신경장애, 유산, 암을 일으키는 '빌딩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탄생시켰다. 이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실내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절치 못한 실내 환경은 일의 능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건강을 해친다. 특히 실내공기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의 성분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여름철의 과도한 냉방은 냉방병을 일으키며, 너무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질병을 일으킨다. 또한 실내공기가 계속 밀폐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등 여러 유해한 가스가 축적되어 두통, 현기증, 집중력 감소 및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콘크리트, 대리석, 벽돌에 조금씩 방출되는 라돈은 폐암의 원인이 되며,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스레인지 등 주방기구는 질소화합물을 배출하여 호흡기 질병을 유발시킨다. 또한 냉장고, 카펫, 에어컨 등에서는 각종 박테리아, 곰팡이와 진드기가 자란다. 특히 집먼지진드기는 천식의 주범으로 주로 담요나 카펫에 서식한다. 이러한 실내공기에 담배연기까지 섞인다면 실내공기는 매우 해롭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쾌적한 실내공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도시의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내의 공기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령을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주기적으로 실내환기를 시켜라.

강제환기시설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서는 개인이 일부러 창문을 여닫는 등의 환기가 필요없지만 그런 시설이 없다면 적당한 간격의 실내환기가 필요하다. 도시에서는 일교차가 심하거나 기압의 변화 등으로 오염된 공기가 대지 위에 많이 분포하는 아침이나 밤보다는 기온이 올라가는 낮시간에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겨울철에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질소화합물, 인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높아져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 햇빛이 비치는 낮에 5분 정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

2) 항상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라.

이를 위해서는 실내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하면 좋다. (건구온도계와 습구온도계가 같이 달린 온도계가 값싸게 공급되고 있다) 과도한 냉방이나 난방을 피해야 하며,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요즘은 가습기를 많이 쓰는데 외부의 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작되는 가습기가 더욱 좋다. 가습기가 없으면 건조한 날에 땀을 실내에 내는 것도 한 방법이며, 실내에 물을 많이 주는 화분을 놓는 것도 좋다. 그리고 매우 건조해지기 쉬운 아파트와 같은 곳에서는 실내 분수나 어항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구석진 곳에 조그마한 실내 정원과 분수를 마련해 보라. 예상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투자하였는데도 매우 좋은 실내분위기와 쾌적한 공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적당한 실내온도는 장소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집이나 사무실은 16-20℃ 정도이다. 그리고 매우 더운 여름날에는 외부와의 온도차는 보통 5-8℃로 유지하는 것이 냉방병 예방에 좋다. 그리고 실내습도는 40%-60%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쾌적하다.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 알레르기 증상, 천식 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너무 습도가 높으면 진드기나 곰팡이의 번식이 왕성해지고 공기중에 황산염이나 아질산 등의 유해물질의 농도를 높게 할 수 있어 좋지 않다.

3)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하라.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담배는 직접 태우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준다. 담배와 간접흡연과의 연구에 대한 권위자인 일본의 히라야마씨에 의하면 265,118명의 40세 이상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14년 추적조사한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남편이 흡연자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폐암발생율이 대략 두배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간접흡연은 천식이나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키며, 정신적인 불편감을 주게 된다. 어린 아이의 경우에도 호흡기질환에 더 잘 걸리게 되는데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노출을 피할 수가 없으므로 일종의 어린이 학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협연권(嫌煙權) 운동', 빌딩내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빌딩내 금연운동' 등은 매우 바람직한 운동이며 앞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공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실내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특히 카펫이나 냉장고, 전열기 주위는 집먼지 진드기의 온상이므로 항상 청결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진공청소기로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이 먼지를 제거하는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탁아소별곡

구호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이야기 하나

아이들에게 요사이 별명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있다. 그 종류와 상관없이 별명이라는 것은 그들이 커서 이 공간의 즐거운 기억과 함께 기억되는 단어이고, 추억일 것이라는 점에서 별명을 지어주기로 하고는, 신나는 별명짓기에 서로 재미를 붙이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박상희 선생님이 지원이(6세 여아)에게,

선생님 : 지원아, 너도 별명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만들어줘.

지원 : 잠깐만요! 음...

선생님 : 빨리 생각해.

지원 : 별명이 생각 났어요. 똥똥이 선생님이요. 히히히...

선생님 : 그건 너무 심하다. (삐죽삐죽)

지원 : 그러면, 이쁜이 선생님이요.

선생님 : (웬 아부성) 그건 아닌거 같은데?

지원 : 그러면요, 똥똥한 이쁜이 선생님이요.

선생님 : !!!

이야기 둘.

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출근하면서 꾸미고 갈 필요도 있다. 이쁘게 꾸민 모습의 교사를 보면서 아이들도 기분 좋을 것이고, 자모들도 달리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가끔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릴 일이 생긴다.

어느날 머리에 기부스(!)를 하고 출근한 박정미 선생님을 본 태균(5세, 남아)이 왈,

태균 : 선생님 머리가 얼었나봐요.

선생님 : 아니야. 이거는 선생님 머리에 스프레이라는 것을 뿌려서 딱딱한 거야.

태균 : (한참 생각 하더니) 아~ 그래서 얼었구나.

이야기 셋.

요새 교사들은 거의가 화장을 하고 다닌다. 하지만 간혹 화장을 안하는 선생님이 계시기도 하다.

어느날 자유놀이시간을 열심히 즐기던 지원이가 선생님들에게 다가오더니,

지원 : 선생님들, 귀걸이 하나씩 사줄게요.

태균 : 나는 목걸이 사줄꺼다.

해수 : 나는 선생님 자동차 사줄꺼다.

태균 : 그러면 나는 선생님 예쁜 집 사줄꺼야.

선생님 : 아이구, 너희들 집 거덜나겠다.

지원 : 그런데 정선생님은 귀걸이 안사줄꺼야.

정선생님 : 왜, 나는 안 사주니?

지원 : 선생님은 화장을 안했잖아요. 귀걸이는 화장한 사람만 하는거예요.

선생님들 : ???

● 우리들의 목소리

탁아교사 수련회를 다녀와서

김명숙 / 인천 나눔어린이집 교사

올 여름이 어땠는지는 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뽕뽕 더위'라고 쉬지 않고 흐르는 땀. 그런 여름의 어린이집이란 가히 환상적(?)이었다. 거의 매일을 마당에서 물놀이로 지낸 것 같다. 어쨌든 이제 여름의 끝에서 그때를 기억하는 일은 오히려 추억으로 다가온다. 왜냐면 탁아교사로서의 첫 여름과 그여름의 한 복판에 다녀온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 하계수련회'의 강렬함 때문이리라.

1년에 한두번도 벗어나기 힘든 도시를 떠나 '배낭 메고, 모자쓰고' 신나게 떠난 수련회 장소는 예로부터 물 맑고 산세가 수려해서 수 많은 도인을 배출한 그곳, 계룡산이었다. 여장을 풀고 강당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나의 동료, 선배, 후배 탁아교사를 만난 시간은 정말 감격적이었다. 부산, 광주, 전주, 부안, 대전, 안산, 인천, 서울...

일정중 두가지 주제의 강연이 준비되었는데 첫번째는 '후원자 관리'였다. 생소한 것 같았던 주제는 박주현 변호사님의 정열적 강연으로 금방 시간이 흘렀

다. 강연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우리 '비영리 민간탁아소'에게 후원이란 단순한 물질제공자의 의미뿐 아니라 공동의 육아,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의미로 후원자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돌아가면 그동안 잊었던 후원자 관리와 조직을 새롭게 시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두번째 강연은 '지방자치시대와 여성'으로 제목만 보면 지루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강연이 끝난 후에야 정치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여성, 바로 우리 자신이 참여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던 주변의 이야기들, 탁아교사로 있으면서 점점 세상을 보는 눈이 협소해지고 하루종일 아이들과 지내면서 교육이란게 그저 어린이집 안에서 몇가지의 교구 교재와 놀, 율동만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관성화되어가는 내 삶의 작아짐이 이 강연을 들으며 아프게 실감되었다.

교사란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처음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유아들에게 있어서 교사란 무엇인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과 지혜, 옳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부정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정의로움과 이를 실천하는 자세를 갖춘 교사 자신의 내면화된 가치관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우고 또 아이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교사의 모습이 아니던가.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도, 쉬지 않고 세상을 보는 지혜와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게으름과 무지 때문에 시사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지방자치란 지역의 살림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한다는 간단한 원리이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의 아이들을 공동육아하는 우리가 명확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낼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 교육할 수 있으리라.

이번 수련회에는 교사 교양, 유아교육 실기, 교사 친목도모, 토론, 체력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노래, 율동, 체조, 손유희, 티셔츠 그림도안 등의 실기 강습이 있었고 친목과 단결, 그리고 체력 훈련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겸한 미니 추적놀이를 하였다. 계룡산 일대를 종횡무진하며 진행된 이 놀이는 각 포스트를 찾아다니며 지시사항을 완수하는 놀이였다. 무엇이냐 잘하는 교사들인지라 머리면 머리, 힘이면 힘, 단결력이면 단결력을 과시하며 정말 신나게 놀았다. 이외에도 또래모임과 계룡산 동반 등 1박 2일을 1분 1초도 헛됨없이 값지게 보냈다.

돌아오는 기차안에서 더이상 여름은 겹치지 않았다. 수련회동안 배우고 다짐한 것들을 실천하겠다는 바쁜 마음 때문에 대전역에서 영등포역까지의 짧은 기차여행이 길게만 느껴졌다.

'94 지탁연 자활M.T를 다녀와서

유숙연 / 송의여전 유아교육과 세사모, 꽃동네놀이방 자원활동가

어느새 창밖의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진다. 엇그제만 해도 반팔티 아니 나시를 입고 다녀도 더워서 배꼽티니 레이어룩이니 하는 옷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긴 소매옷을 입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사람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며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계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내게 있어서 지난 여름은 '송의'를 다니면서 맞게 되는 마지막 여름방학으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내 여름방학동안의 많은 계획들중 하나가 내 친구랑 같은 과 언니네 집에 놀러가는 것이어서 한창 그 사실로 들떠 있을 때 '세사모(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양세미나를 맡고 있는 경란언니로부터 지탁연 자활M.T에 같이 가자는 제안의 전화가 왔다.

그동안 세사모에 들어와서 그리 열심히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지탁연 M.T를 가는 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을까 싶어 승락했다.

M.T를 가는 날, 난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배낭을 맨 후 집을 나섰다. 그런데 버스가 빨리 달려온 것인지 아니면 서울이 아닌 곳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 설레

글 마 당

있던 마음이 너무 큰 탓이었는지 한 시간이나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 그 한시간이 나에겐 하나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책 넘머로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참 재미있었다.

시계탑으로 걸어가며 '어떤 사람이 지탁연 엠티를 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 그냥 느낌으로 지탁연 합숙을 가는 사람들을 알 수 있었다.

맨처음 난 좀 실망했다. 청량리역에서 만나 기차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버스를 타고 간다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일반 버스가 아닌 좌석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이었다. 설레인 마음 탓에 설친 잠을 덕분에 실컷 잘 수 있었다. 우리가 좌석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말만 들었지 한번도 간 적이 없는 콘도(편집자주: 실은 콘도같이 생긴 민박업소였음)였다. 기차를 못타고 온 설한 마음이 썩 가셨다. 또 그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큰(?) 개가 두 마리나 있었다.

그 더운 날씨에 김치찌개를 끓여 사우나를 해가며 점심을 먹은 뒤,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 이 시간이 제일 힘이 들었다. 나의 나쁜 머리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연대 애포레에서 준비한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듣고 놀이방의 아이를 예로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다들 진지하게 듣고 토론했다. 그런 진지한 분위기에서 잔 사람들이 있었을까?

저녁을 먹고 곧바로 '아동실기 교육'

에 들어갔다. 국민대, 이대, 숭의여전에서 각각 아동체육, 음률활동, 미술활동을 맡아 준비해온 것을 직접 자활들이 참여하고 만들면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며 동시에 우리 놀이방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들을 취하는 정말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미혜언니의 자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각 학교별로 모여 지금 우리 놀이방이 갖고 있는 문제, 앞으로의 계획, 자신의 반성시간을 가졌다. 들들이 얘기 해오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 같이 이야기함으로 더 좋은 방안들과 구체적인 계획들, 예를 들면 교양과 전공 세미나를 격주로 하는 것이나 계획안을 연관성있게 짜자라는 등의 말들이 나왔다. 각 대학의 사정들을 말함으로 서로 이해하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면서 열심히 만들고 토론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풀었다. 윗놀이, 연상게임을 한 뒤 서로 자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아졌다.

나는 그날의 여행을 위해 아침밥을 먹고 급히 지탁연 엠티장소인 양수리를 떠났다. 혼자 버스를 타고 청량리역까지 가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내가 얻은 것이 너무 많았기에...

이젠 뒤에서 지켜보는 자활이 아닌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활이 되기를 이 가을에 소망한다.

■ 탁아계 풍향

'94 하반기 어린이집 교사 연수안내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에서는 보육교사를 위한 '94년도 하반기 교사연수회를 마련하여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회 : 10월 15일(토) 오전 10-12시

주제 : 부모면담 기법

강사 : 강문희 교수(서울여대 아동학과)

⇒ 교사가 부모를 만나서 어린이집 보육 방침을 이야기하고 아이에 대해 논의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 나가야 할 지 알아보고, 역할놀이 실습을 통해 면담기술을 습득해본다.

2회 : 11월 18일(금) 오후 3-5시

주제 : 문제행동 발견과 행동수정

강사 : 오경자 교수(연세대 심리학과)

⇒ 아동들 중에는 크고 작은 문제를 지닌 아동이 있을 수도 있다. 아동의 문제점은 어떻게 발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장소 : 삼성어린이개발센터 세미나실

참석인원 : 1회당 50명(선착순)

참가비 : 없음

신청방법 : 전화 (02) 417-8465~6

모사전보 (02) 424-5868

담당 김미경

'94월간유아 재롱잔치 워크샵

'94월간유아 재롱잔치 워크샵은 재롱잔치에 필요한 실제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기위주의 교육모델을 제시한다.

때 : 94. 10. 29. 9:30 - 18:00

곳 : 올림픽공원내 펜싱경기장

(제2체육관)

참가대상 : 전국 유아교사, 원장, 유아교육학과 재학생 등

행사내용 : 재롱잔치를 위한 무용, 재롱잔치 및 X-MAS를 위한 노래와 율동, 만들기 등

참가회비 : 월간유아회원 13,000원

(본회 자료회원도 가능-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비회원 16,000원

접수 : 예상참가인원 600명, 선착순

주최 : (주) 한국유아교육원

주관 : 월간유아

문의처 : 월간유아 문화교육부

(274-9510~7)

<온라인 입금구좌>

국민은행 004-01-0474-992

(한국유아교육원)

한일은행 004-251811-01-001 (//)

우계국 010231-0022253-11 (//)

제일은행 109-10-135605 (//)

조흥은행 307-01-096288 (//)

농협 047-01-229575 (//)

* 온라인 입금후 전화연락 바람

<8.9월 연합회 구비 도서 및 자료 목록>

여성과 사회 5호, 1994 / 한국여성연구회
우리 아이, 우리 엄마 9호 /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월간 유아 1994. 8. 9월호 /
(주)한국유아교육원
월간유아 9. 10월 교육계획안 /
(주)한국유아교육원
참여사회 94. 7. 8월 합본호 /
(사)지방자치실무연구소
제2회 전국지방자치 유권연구소 및 단체합
동세미나 자료집(94. 7. 15-16) / //
다비타의 집 94. 5. 6월호 / 다비타의 집
함께 하는 세상 94. 여름호 /
우리사회복지연구회
'93 만3.4세를 위한 통합유아교육강습회
자료집 / 한국유아교육교사협의회
유아교육신문 94. 8. 1일자
기독신문 94. 8. 6일자
운동본부소식 94. 8월호 /
주한미군법회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여성연구회 회보 94. 7. 8월호 /
한국여성연구회
오행생식요법 / (주)오행생식
농정시책과 식생활 개선방향을 건의합니다
(주)오행생식
일하는 여성 20호, 94. 8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제3차 탁아방, 공부방 교사 및 자원활동가
교육 자료집 / 부스리기독교회
어린이, 공부방, 교회, 지역공동체(지역사회
선교사 교육자료집) /
빈민여성교육선교원
기독여성 94. 8월호 / 기독여성회
유아교육신문 94. 8. 15일자
노동자신문 94. 8. 16일자
지역환경통신 제7호 /
내일을 위한 지역환경연구소

말지 9월호
노동자신문 94. 8. 23일자, 8. 19일자
기독신문 94. 8. 20일자
후원회 소식 33, 34호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함께걸음 94. 8월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승의여전 학보 94. 8. 29일자
대구여성 37호, 94. 8. 4 / 대구여성회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20, 1994. 여름
/ 서울 YMCA 건전비디오 문화를 연구하는 시
민의 모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 공동육아연구회
가정상담 94. 8월호 /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춘기자녀의 성, 어떻게 가르쳐야할까요?
/ 한국여성개발원
도산회보 94. 7. 8 / 도산기념사업회
서울시민신문 94. 9. 7일자
들소리신문 94. 9. 11일자
쉼터 제10호 / 대구여성의 전화(에디터)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한. 일 여성 94. 여름호 /
(사)한일여성친선협회
나눔터 94. 8월호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노동자신문 94. 9. 2일자
서울시민신문 94. 8. 31일자
주일신문 94. 9. 4일자
양천신문 94. 9. 8일자
병원노동자신문 94. 8. 23
노동자신문 94. 9. 13일자

본 연합회에 여러 자료들과 회지를 보내주신
단체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씩씩이 놀아방, 아기가갓터, 세쌍둥이어린이
집, 나뉘어린이집에서 보내주신 회지, 잘 받
았습니다.

■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지탁연 일선교사, 일본 보육의 현장탐방

최현숙 회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일선교사
들과 사무국의 남미영 부회장, 오윤정 교육
부장 등 11명이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일본 방문기간 일본 오오사카의
성화보육소를 비롯한 보육시설 견학과 보육
행정간담회 등에 참석하였으며, 특별히 최현
숙 회장과 오윤정 교육부장은 7월 30일과 8
월 1일 이틀동안 일본 군마에서 개최된 '제
15회 전국보육대회'에 참관하였다.

이번 탐방교사들은 각 지역에서 4년~ 6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지탁연의 산 증인이다시
피한 교사들로, 일본 보육시설 방문은 이들
에게 새로운 힘과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기회
가 되었다.

한편, 연수단은 이후 비디오제작과 자료
집 발간을 통해 일본연수의 보고를 할 계획
이다.

- 지탁연 교사 여름 수련회, 많 은 참여속에 끝내

본 연합회에서 매년 두회에 걸쳐 개최하
는 교사 수련회가 상반기를 마감하는 가운데
지난 8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이틀간
대전 동학사 입구의 동학산장에서 많은 회원
들의 참석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예년의 2박3일의 일

정과는 달리 1박2일로 기획, 진행되어 보다
많은 회원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
대해 평균 120여명의 참석에서 이례적으로
160여명이 참석하는 성대한 수련회로 마무리
되었다.

수련회의 내용은 후원인 관리(박주현 변
호사), 지자체교육(이미경 여연공동대표) 등
의 외부 강연과 함께 올바른 조직운동을 위
한 조직특별위원회와 아동분과에서 준비한
내용은 지탁연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해결대안으로 마련되어 교사들에게 많은 도
움이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 전국적으로 국민연금 용자신청 마쳐

민간 및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 용자신청이 지난 8월 10일 마감된 가운
데 전국적으로 1,306건의 신청(신청액
280,038백만원)이 있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보사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용
자신청에 앞서, 소액이 대부분인 시설설치비
및 기능보강비를 우선으로 지원할 것등의 지
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2건으로 가장 많
은 신청을 보였으며, 그 다른 지역이 기능보
강비 신청의 대부분을 신청한 반면, 서울시
는 신청액 1,557백만원의 1/3수준인 5억5천
만원만을 용자키로 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보사부에서는 이번 용자건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이에게 사업추진 상황의 정기적인 제
출 및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 론회' 개최

본 연합회는 지방자치관련연구소협의회
(준)와 함께 공동주최로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9월 13일(화) 오후 3시에 국회의사당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마련된 이 토론회에는 지방자치관련 연구소, 보육시설 종사자,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최현숙 본회 회장)', '보육사업과 지방자치제의 조례제정권(이기우교수)'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날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두 단체는 지역별 공청회를 마련하고 '보육에 관련한 좋은 조례 제정'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보사부, 보육법령 개정간담회 개최

지난 7월 25일 오후 2시 과천종합청사 보사부 회의실에서 '보육사업 확충, 내실화 방안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는 본 회(정희연 부회장 참석)를 비롯하여 당, 정 관련 부처 10개 기관, 학계 5개 기관, 관련단체 6개소,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김명숙 가정복지과 심의관의 주제로 3시간여동안 진행되었다.

회의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 직장보육시설 관련조항, 장학지도 관련조항,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조항, 보육교사 양성교육 관련조항 등이었다.

특히 관심을 모은 비용보조 조항은 1인으로 기존항목을 보완해 기존항목에 조례제정 근거를 규정한다는 것과 그안으로 별도항목으로 신설하여 연구기능강화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정책연구소의 설치, 운영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조례 제정 근거를 별도항목으로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참석자들 대부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를 명문화한다는데 긍정적 견해를 밝혔으나 서울시, 경기도 등 가정복지

과 공무원들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용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8월 개정시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94년 9월 입법예고, 10월 경제장관회의, 11월 법제처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후 12월 개정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병원노조, 직장탁아소 추진활동 활발

병원은 70-80%가 여성으로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사업장으로, 이들 중 기혼 여성 노동자는 대략 30-40%로 추정된다.

이에 병노련에서는 90년 단체와 직장탁아소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면서 여성들의 평생 직장생활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직장탁아소에 대한 절실함에 공감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꾸준히 단협에 직장탁아소설치를 명문화하여 몇몇 병원이 탁아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는 공동요구안의 하나로 직장탁아소설치를 요구하여 공동교섭이 이루어진 지역의노협, 서울지부, 인부천지부는 직장탁아소설치를 합의하였고 인부천지부는 보육료의 50%를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병원 노동자들의 경우 교대근무의 특성상 지역 탁아소에서 기대할 수 없는 24시간 탁아소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 특성에 맞는 직장탁아소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신촌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원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신촌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원장 정병호)'이 지난 9월 3일(토)에 드디어 개원식을 하였

다.

'우리어린이집'은 주로 전문직, 중산층 자모들이 모여 1인당 300-400만원씩 출자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만들어진 어린이집이다. 또한 기존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지 못한, 장애아와의 통합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궁금해지고 있다.

개원식에는 본 회 최현숙 회장과 황미혜 문화홍보부장이 참석하였다.

사람들

결혼하셨습니다.

* 봉천지역위원회의 대표로 활동하시는 정은진(28, 봉천동메기방)씨가 9월 10일 잠실 아시아공원에서 오후 1시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 수원 올망졸망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느라 여름내 땀흘리시던 정순옥(26)씨가 9월 4일 하림각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두분의 새로운 생활을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하셨습니다.

* 동부 오손도손메기방에서 생활하시던 박정애씨가 지난 7월 27일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으셨습니다.

* 안산 진달래동산의 임남희씨도 역시 '국일'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 게다가 동부 개구장이어린이집에서 활동하시던 박영미씨도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선생님, 아기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전을 가졌습니다.

* 수원 용기중기의 전경숙, 이주영씨가

사진동인 '나무'회원전에 작품을 출품하셨습니다. 사진전은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선화당에서 있었습니다.

연합회 일지

- 8/1-2 여름수련회
- 9 일본 보육소 견학팀 평가회
- 12 일본 메그미보육소 교사단 새터어린이집 방문
- 16 서울경인지역 자활회의
- 18-19 농촌탁아소 수련회
- 20 편집회의
- 교육연구부
- 23 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장회의
- 25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 29 여연 정책과 사업위원회 회의
- 30 지방 아동분과 회의
- 31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 연대회의 창립총회
- 9/ 2 서울대 병원 직장탁아소 자문회의 (최희정 참석)
- 3 교육연구부 모임
- 신촌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 개원(회장, 문화홍보부장 참석)
- 6 지방지역대표자회의
- 8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 편집회의
-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회의
- 10 여성의원 후보자를 위한 후원의 밤
- 11 자활회의
- 14 어머니 큰잔치 1차 준비모임
- 15 조직발전특별위원회
- 16 우리복지연구회 교육(회장님 출강)

■ 베품시장

* 베품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임, 수익사업, 뭉툭교한 등의 정보를 실습니다. 정보를 주시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에 찬 교사를 구합니다. 서울, 부천, 안산지역에서 어린이집 교사 활동하시기 원하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본 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275-8505~6)	<지역보육운동> 책자 판매 일본 乳幼児發達研究所 스즈키 소장의 논문을 엮어 주민자치연구소와 지탁원이 공역한 <지역보육운동>을 판매합니다. 판매가 : 5,000원
백세주, 이십삼전대보탕 판매 고마운 분에게 선물하기 좋은 백세주, 이십삼전대보탕(농민후계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청 : 본 회 사무국 가격 : 백세주 17,000원(6병입) 이십삼전대보탕 35,000원	김장용 고추가루 판매 본 연합회 재정사업국에서 직영하는 '우리네 방앗간'에서는 김장용 고추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남산 태양초로 정성껏 빻은 고추가루를 김장에 이용해보세요. 가격: 1근당 7,000원 신청: 우리네 방앗간 * 주문량이 많은 경우 배당 가능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회의내용 : 어머니큰잔치 아동프로그램 논의, 아동 수놀이 교육 일시 : 94.9.25(일) 오전 11시 장소 : 송의여전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미혜를 찾으세요.	알림장 판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의 일과를 상세히 적어 부모님들에게 보낼 수 있는 알림장을 판매합니다. (판매가 300원)
구로어린이집 공사기금 마련 일일호프 어린이집의 공간확보를 위한 보증금 및 개보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일일호프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연재: 10.1(토) 오전 10시-오후 12시 어디서: 가리봉호프(853-2996)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 감상을 적은 글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받겠습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 편집부에서

* 이번호는 8.9월 합본호로 나갑니다. 보시는 분들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육관에 대한 기획내용은 다음호에 다시 마지막편이 나갑니다.

* 참새방앗간원고를 모집합니다. 다음달 주제는 '결실'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간혹 원고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분의 원고가 도착되지 않아 실지 못하는 일이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통로로 보내주세요.

*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이 제때 제곳에 도착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받아보시지 못한 소식지가 있으면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보신 후 잘 받았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소식지를 만드는 편집부원 모두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지요.

* "우리네 아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이나 의견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신 분들은 서슴없이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반송되는 소식지가 간혹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한울타리 어린이집(재구독), 최성미님, 김정희님.
6개월 구독: 김일명님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었거나 구독

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께서서는 온라인입금 후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맘껏 게으름을 피었다.
둔탁하게 나를 내리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의 노래
-혜민

*
- 양

* 올해처럼 가을을 실감하기는 처음이다.
나이를 먹는다는게 점점 두려워지고 있다.
-희연

* 결실을 앞둔 이들의 여유로운 마음을
배워야 할 때인가 보다.
갈수록 내 가슴은 비좁게만 느껴지고..
-미혜

"우리네 아이들" 독자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들 보내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 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0,000원 1년 구독 20,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무은이: 정희연, 주혜민, 변미양, 황미혜

펴낸날: 1994년 9월 25일